# 2010 정책제안서

# 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 이래 여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 '여성인권보호 및 성평등 수준의 제고', '성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및 세계적 위상 강화', '일가족 양립의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 연구목표로 총21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본 정책제안서는 2009년도에 본원에서 수행한 21개의 기본연구사업의 대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여성인력, 일가족양립, 성인지정책, 평등문화, 다문화 · 여성인권안전, 가족 · 여성복지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자료가 각 부처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정책제안에 대한 협의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은 기재된 연구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원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연구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본원의 정책연구방향 수립과 연구주제 발굴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도 본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에도 본원의 연구결과가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태 현

# 목 차

■ 여성이력

▋▍성인지정책

# 

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균등 수혜 방안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44
14.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문유경 연구위원
15.	실업급여제도의 취약계층 포괄 방안/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1
1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개선 방안/김영택 연구위원 55
17.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58
18.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김경희 연구위원62
평	등문화
19.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
	(광역 20%, 시·구 30%, 군 20%) 도입/김원홍 연구위원 ······ 69
20.	남성의 젠더의식 검사도구 개발/이수연 연구위원74
	양성평등한 남녀공학교육을 위한 중등학교 교사 현장 연구 지원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77
22.	성평등 실천 문화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방송발전기금 지원
	/ 안상수 연구위원82
다	군화・여성인권안전
23.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선주 연구위원89
24.	다문화 전문인력 역량 진단 및 모델 개발
	/ 민무숙 선임연구위원94
25.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방지 대책/이미정 연구위원 97
26.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장미혜 연구위원102

# ■ 가족・여성복지

27. 여성가족패널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 이택면 연구위원 ······ 109
28.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강화 방안/김혜영 연구위원111
29.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김혜영 연구위원113
30.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용역기부)의 확대
/ 조선주 연구위원116
31.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 및
e-통장 개설/조선주 연구위원120
32. 자원봉사활동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조선주 연구위원 124
33. 가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문화연계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단체의 웹사이트 개설 지원/조선주 연구위원 127
34.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김영택 연구위원 131
2009년도 연구과제명
1 2000년 카타성그리케 모른 120
1. 2009년 기본연구과제 목록139
2. 2009년 수탁연구과제 목록147

# 여성인력

1.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소득세 개선 방안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3
2.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도화 방안/오은진 연구위원	6
3. 「남녀고용평등법」의 행정적 기반 강화	
/박선영 연구위원	8
4.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 방안	
/문미경 연구위원	13
5 정규직 파트타임 근무의 보호와 차별 해소	
/ 홍승아 연구위원	15
6. 법학 전문대학원 여학생 진로개발 지원	
/ 신선미 연구위원	17
7.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설문조사원	
직업훈련과정 개설 및 사후관리	
/신선미 연구위원	19

#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소득세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dimail.re.kr

#### 요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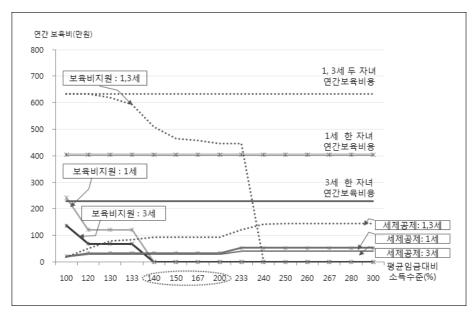
여성취업 증진을 위하여 소득세중 자녀보육비 공제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비용 공제 한도를 차등, 확대할 필요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 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 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조세・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조세・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센티브를 분석하였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 본 연구의 한국형 조세 · 급부모형 결과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맞벌이가 구에게 유리함. 그러나 맞벌이부부가 모두 평균임금의 100%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음.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보육비 지원이 중산층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자녀보육비 공제방식으로 지원하는 소득세에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임
- □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비 지원은 여성고용 뿐만 아니라 출산율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자녀 유형별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현행 보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부의 보육비지원을 나타내는 <그림 1>을 보면, 주어진 여건에서 소득세를 통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자녀 1세 혹은 3세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 조세급부제도에 의해서 보육비지원 혜택이 가장낮은 평균임금의 140~200%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세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임. 즉, 가구소득이 평균임금의 140~200%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정 과세표준 기준을 설정하여 보육공제 한도를 차등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육관련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임



<그림 1> 현행 정부보육지원제도의 고용효과와 개선방안

# 3. 정책효과

- □ 소득세중 자녀보육비 공제방식을 개선하여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자녀양육 비용 지원의 균형화 도모
- □ 보육비용 공제에 대한 세제 개선을 통하여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
- □ 안정적 보육정책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 인센티브 제고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도화 방안

수행과제명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Ⅲ): 일자리의 제도화

과제책임자 : 오은진 연구위원 Tel: 02-3156-7126, e-mail: eunjin5@kwdimail,re,kr

#### 요 익

본 과제는 비공식 사회서비스의 주요영역인 돌봄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의 상용직화와 4대보험에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수요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정책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 과정과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며 아이돌보미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도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원활한 인력수급과 일자리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구인-구직 네 트워크 마련과 고용알선전문기관의 육성이 필요

#### 6\_2010년 정책제안서

	기하급수적으로 양성되는 "요양보호사"의 질적 관리를 통해 인력수급을 조정하는 정책을 수행
	현재의 돌봄 노동의 국자자격증 체계 개편
	단시간 일자리 형태의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사회보험가입율을 높이기 위 한 사회보험요율 적용의 탄력성 및 보험료 감면 혜택 방안 추진
	간병인·아이돌보미 이용자 가정과의 "고용협정제도" 도입⇒민간의 사 회적 기업 확산 정책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단기 일자리 정책 사업을 통해 시장수요를 확인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
3.	정책효과
	제시된 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규모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서비스 일자리의 자격화와더불어 일자리의 질 개선 그리고 비공식 부분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 정책과)

▶ 관계부처 : 여성부(인력개발기획과), 여성부(인력개발사업과)

# 「남녀고용평등법」의 행정적 기반 강화

수행과제명 :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Ⅲ)

-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과제책임자 : 박선영 연구위원 Tel: 02-3156-7108, e-mail: sypark@kwdimail.re.kr

2009년 현재 시행 22년째에 접어든 『남녀고용평등법』은 그동안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고용상 차별개선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으며,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법적 미비점 보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그리고 행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	용평등
법」이라 함)은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고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
어, 2009년 현재 시행 22년째에 접어듬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 히 고용상 차별 개선에서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제 기되는 여성노동시장의 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사회·문화적 그리고 행정적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적 미비점 보완 사항으로는 간접차별 정의 개정 및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 범위 확대, 형법체계에 기반한 법의 실효성 한계와 민사적 제재 강화 등을 들 수 있지만, 이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근로감독관의 차별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은 1차적으로 지방노동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 이 조사·처리하게 됨
  - 근로감독관의 차별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남녀고 용평등법」관련 직무교육의 내용에서 다른 교육과는 달리 성인지적 감 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거나, 여성부 산 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양성평등교육 전담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지침」개정

-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1992년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지 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지침은 1999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1999년 법 내용의 변화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변화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그 동안의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을 통해 행정감독기능을 내실화해야 함

####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판단지침 제정

-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판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원칙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독립된 지침이 필요

#### □ 기업 내 자율적 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 기업 입장에서 차별을 문제로 인식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행 정조치 상의 차별 개념과 판단 기준이 추상적임
- 기업 스스로 차별 발생 소지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성차별 여부 를 기업 스스로 판단ㆍ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제도의 정착은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로서, 우리 사회의 미 래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 의미가 큼
- 현재 부여하고 있는 인센티브 이외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예: 세무조사 1년 유예,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참고 자료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비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가산점(0.5점) 부여	·정부물품 조달 적격 심사 시 우대(0.5점 가점)
· 여성고용 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장학금사업 등에서 우선순위 부여	·근로자 학자금 저리대출, 우선 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사용(3년간)	·세무조사 1년 유예
	·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 시 우대(0.5점, 급식분야 0.25점 가점)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우대(3년)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용역 적격 심사 시 우대(0.5점 가점)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기반 조성

- 평등한 양육문화나 고용평등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의식 개선 활동
- 남녀고용평등 관련 제도에 대한 대국민, 대기업 홍보 활동 강화
- 고용상 성평등은 법률, 벌칙을 통한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제도가 기업에 이 득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여성인력에 대한 경영진의 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3. 정책효과

□ 「남녀고용평등법」의 법・제도적 인프라에 행정적 기반까지 강화함	-으로써
실질적인 여성 노동권 보장 실현에 기여	
□ 고용상의 차별 개선 효과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사회에 여성인틱	격의 경
제활동을 촉진	

▶ 주관부처 : 노동부(여성고용과)

▶ 관계부처 : 노동부

#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 방안

수행과제명 :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 방안

과제책임자: 문미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3, e-mail: geokim@kwdimail.re.kr

#### 요 약

공직에서 관리직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의 성장과 역 량발휘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남성 중심적 조직운영에서 여성의 역량개발과 발휘는 제한적이었다고 할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관리직 여성의 역량개발과 발휘가 최대화 될 수 있는 개인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 개인적 수준의 역량지원
  - 관리직여성 맞춤형 역량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다양한 보직기회 부여

□ 조직적 수준의 역량지원
<ul> <li>의사소통의 활성화로 관리직 여성 역량발현성 최대화 및 조직문화 교류 기회의 확대</li> </ul>
□ 사회문화적 수준의 역량지원
- 다양한 보육형태의 보육시설 지원, 유연한 근로형태의 활성화, 가족친 화적 사회/조직문화 형성
3. 정책효과
□ 관리직 남녀공무원 역량실태 자료 제공
□ 공무원 역량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료 제공
□ 조직구성원의 충분한 역량개발과 발휘를 통한 정부성과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조직구성원의 충분한 역량개발과 발휘를 통한 정부성과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균형인사정보과), 행정안전부(교육훈련과)

# 정규직 파트타임 근무의 보호와 차별 해소

수행과제명 :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과제책임자 : 홍승아 연구위원 Tel: 02-3156-7149, e-mail: hongsa@kwdimail.re.kr

#### O 0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과제는 노동시장과 가족영역의 유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장시간노동관행을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유연한 노동시간근무형태로서 파트타임근무를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유연근무형태는 육아 및 가족생활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 정함으로써 취업중단 없이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트 타임 노동의 보호와 차별해소 노력이 필요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정규직 파트타임근무형태는 고용보장과 함께 사회보험의 혜택을 정규직 전일제근무와 동일하게 부여함
- □ 비례임금체계(시간비례형 임금)를 적용하여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

□ 수당,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권리 및 보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시간제근무와 전일제근무 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 정책의 대상은 여성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성과 부모로 확장하여 파트타임 근무의 노동시장내 게토화를 방지함
3. 정책효과
□ 육아기 부모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함
□ 맞벌이부부의 육아에 따른 시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있는 가 족생활을 지원함
□ 일자리 공유(job sharing)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확대의 효과를 갖음
□ 궁극적으로는 취업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여성부(인력개발기획과), 보건복지가족부(저출산인구정책과),

노동부(여성고용과)

▶ 관계부처 : 노동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

# 법학 전문대학원 여학생 진로개발 지원

수행과제명 :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 촉진방안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02-3156-7125, e-mail: @seonshin@kwdimail.re.kr

#### 요 약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단계에 여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여 법무 서비스 분야에 여성 인력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전공분야별 인턴 프로그램, 선배 법조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단계에 여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여 법무 서비스 분야에 여성인력의 진출을 촉진함
- □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의 진로를 공공부문(법원, 검찰청, 정부부처, 기타 공공기관) 중심에서 변호사업, 특히 다양한 분야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변호사업으로 확대함
  - 2008년 여성법관은 496명으로 전체 법관의 21.5%이고, 신임 법관 96명 중 여성이 67명(69.8%)였음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10,500명이고 그 중 여성은 1,118명 (10.6%)이며 대형 법무법인의 신규 채용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30% 정도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은 39.8%이며 대학원에 따라 20%대에서 50%대까지 여학생 비율이 다양함.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들은 학력과 7력 면에서 우수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비를 부담도 높은데 비학재학 중 진로개발 기회가 부족하고 졸업 후 진로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인턴 프로그램, 선배 법을 인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
□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여성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의 여/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인턴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li>대한변호사협회의 여성변호사회는 후배 여성 변호사 육성을 위한 사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나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편임. 향후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발전하고자 준비 중임</li> </ul>
□ 법학전문대학원 여학생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개인별 진로개특 방법, 취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면접 노하우 등) 개발 및 보급
3. 정책효과
□ 변호사업계에 여성 우수 인재 진출 촉진하고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육 제도의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여성부(인력개발사업과), 여성부(교류협력과)

18\_2010년 정책제안서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인재정책기획과), 법무부(법교육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설문조사원 직업훈련과정 개설 및 사후관리

수행과제명 :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 촉진방안

과제책임자 : 신선미 연구위원 Tel: 02-3156-7125, e-mail: @seonshin@kwdimail.re.kr

#### O 0

여성이 대부분인 설문조사원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사업체에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함. 설문조사원에게 요구되는 기초 지식,역할, 책임감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및 이수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보급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설문조기	사원 일저	사리의 질적	수준을 제.	고함과	동시에 3	조사업체에	우수	설문
조사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 있는	네트워크	크를 마련힘	}	

- □ 조사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업 선진화 정책에 포함되는 산업임
- □ 설문조사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도 많음.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조사원 인력의 확보가 조사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 로 중요하나, 조사원의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업 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움

- □ 설문조사원은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이 용이하며, 중·장년층의 경력단절 여성도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이나, 근로조건(임금 등)이 열악하고 고객(조사대상자)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조사의 질을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조사업체가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여지가 있음. 숙련도가 높은 설문조사원은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임

### 2. 정책의 추진방향

-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으로 설문조사원 직업훈련 과 정을 개설함
  - 조사원으로서의 기초 지식, 역할, 책임감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하여 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보급
  - 조사업체 단체(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지역 내 조사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통계청,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등과 일자리 연계 네트워크 구축
  - 교육훈련과정 이수증 발급, 고객(조사대상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 사원 신분증 개발, 이수자 사후관리 서비스 개발

# 3. 정책효과

□ 여성이	대부분이	설문조사원	일자리의 집	질적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가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	스업 선진호	ի에 기여함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주관부처 : 여성부(인력개발사업과), 여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관계부처 : 노동부(여성고용과)

# 일가족양립

8.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소득구간 세분화 및 지원기준 상향 조정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23
9.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한부모 가구의 보육비지원 강화/김태홍 선임연구위원	28
10	).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김태홍 선임연구위원	31

#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보육비 지원 소득구간 세분화 및 지원기준 상향 조정

수행과제명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dimail.re.kr

####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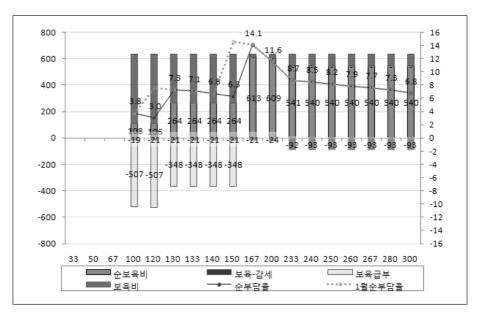
자녀육아 책임이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무게가 주어지는 현실에서 보육료 지원제도는 여성의 취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 현재의 보육비 지원은 소득구간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구간 간 지원금액의 차이가 큼. 따라서 보육선진국들에서와 같이 소득구간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효과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또한 지원금의 확대는 지원율 확대 보다는 대상 가구의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 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 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ㆍ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조세ㆍ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조세ㆍ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세티브를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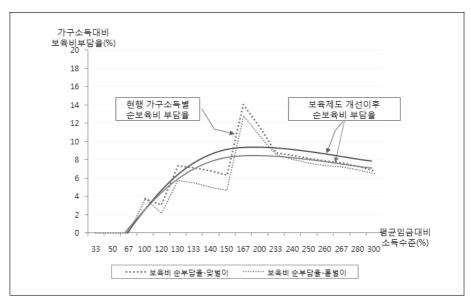
### 2. 정책의 추진방향

- □ 보육은 취업 뿐만 아니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의 정책수요자 대상 조사결과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정부 보육비지원대상 가구소득 수준의 상향 조정, 결정세액에서 보육비 공제한도 인상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았음
- □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을 중심으로 보육비를 지원함. 지원율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3단계(100%, 60%, 30%)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층 구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수혜 차이가 큼
  - ※ 일본: 중앙정부는 영아, 유아에 따라 각각 7단계로 구분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지원
  - ※ 호주: 가구소득에 비례한 지원방식을 사용하며 소득수준이 35,478달러 미만은 100% 지원, 그 이상 소득수준이면 1,000달러 단위로 소득에 비례한 지원 비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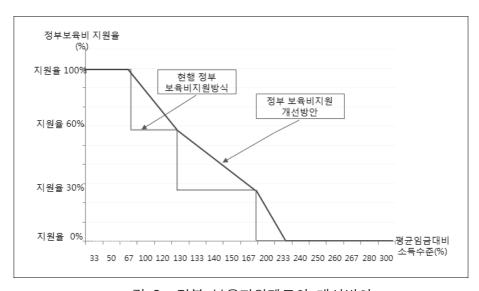


<그림 1> 두 자녀 맞벌이가구의 순보육비 부담율

- □ 본 연구에서 보육비를 포함한 조세 · 급부제도가 가구의 취업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특정 가구소득에 도달하면 보육비 부담이 급증하여 가구의 취업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즉,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육료 지원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설정된 3단계 인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구소득이 평균임금의 133%, 167%를 기점으로 그 이상이 되면 정부보육비 지원이 급감함. 이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가져오는 근로시간대나 일자리에 대한 주소득자 혹은 이차소 득자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킴. 특히 여성이 대부분인 가구의 이차소득자의 특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려는 욕구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음
- □ 따라서 특정 소득구간의 취업인센티브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보육비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야 함
- □ 정부 보육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가구소득이 평균임금의 150~180% 수준인 가구의 순가구소득에 대한 보육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음. 가구의 이차소득자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이러한 가구의 순보육비 부 담률을 낮추어서 이들의 평균임금 50~80% 수준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와 같이 가구 이차소득자인 여성 의 취업인센티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만이라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 현행 정부 보육지원제도의 고용효과



<그림 3> 정부 보육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또한 향후 보육비 지원제도를 확대에서는 현행 보육비 지원기준에서 가구 소득별 지원율을 높이기보다는, 지원율은 그대로 두고 지원 기준이 되는 가구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왜냐하면 정부가 보육비의 60%, 30%를 지원하는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을 제외한 가구의 순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세제도에 의해서 세액공제 형태로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임

# 3. 정책효과

□ 보육료 지원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보육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육정책의 성과 제고
 □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접근성 증진
 □ 안정적 보육정책 운영으로 여성의 취업 인센티브 제고

▶ 주관부처 :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 여성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한부모 가구의 보육비지원 강화

수행과제명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dimail,re,kr

#### <u> 인</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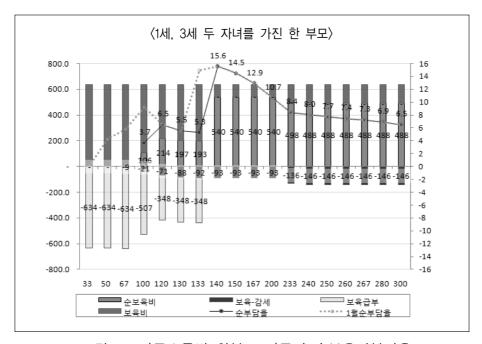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비 지원은 가구원수에 근거하므로 일반가정에 비하여 한부모가 구에게 불리함. 그러나 한부모가구의 경우 부나 모가 반드시 취업을 하여야 하므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보육지원이 요구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 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 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ㆍ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조세ㆍ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조세ㆍ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세티브를 분석하였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부부가 함께 취업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에게 유리함.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를 기준으로 가구의 취업상태에 따른 평균소 득세율을 보면,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들과 맞벌이 가구간의 평균소득세율의 차이는 상당히 큼. 즉, 자녀가 없고 주소득원과 배우자가 각각 평균임금의 100%, 67%를 버는 가구의 평균소득세율은 2.4%로서, 동일한 가구소득을 버는 단독가구(8.1%)나 홑벌이가구(7.6%)의 소득세율보다 낮았음



<그림 1> 가구소득별 한부모 가구의 순보육비부담율

□ 동일한 자녀상황과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가구는 맞 벌이나 홑벌이 가구에 비해서 가구원 수가 적음. 이는 가구원 수를 반영하 여 보육비 지원 기준이 결정되는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아져 한부모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가 적고 특정 가구의 경우 상대 적으로 지원 수준이 낮아지게 됨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조세급부제도의 취업인센 티브는 낮음.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면 직접 보육을 할 수 없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 3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주가 평균임금의 133%, 150% 수준인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순소득부담율이 15.9%, 23.4%로 급증하게 됨. 즉, 우리나라 조세급부제도는,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로 하여금 평균임금의 133%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근로의욕이나 취업인센티브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일정 가구소득 이상인 한부모가구의 취업인센티브 제고를 위해서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하는 한부모 가구에 대
	한 보육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3.	정책효과
	한부모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
	하여 보육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육정책의 성과 제고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 취업인센티브 제고

#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

수행과제명: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분석과 과제

과제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0, e-mail: kimth@kwdimail.re.kr

갓 태어난 어린 자녀의 경우 시설보육보다는 육아휴직을 통한 부모 양육이 바람직함.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직접 양육 요구도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아직 까지는 무급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순소득이 감소되는 변화를 겪을 수 있음. 따라서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 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 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ㆍ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특히 여성인력 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조세ㆍ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조세ㆍ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세티브를 분석하였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연령이 0세, 1세인 자녀가 있는 맞벌이부부 중 한 명이 1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자의 순소득 변화를 순소득대체율로 분석하였음
-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인력활용을 저해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여전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임. 우리나라의 경우 25~29세 연령층의 경력단절 현상은 2000년 초에 거의 사라졌으나, 30~34세 경력단절 여성취업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업종으로는 금융・보험・부동산업에서, 직종별로는 여성 전문가・준전문가에서 주로 나타남. 나머지 업종이나 직종에서는 경력단절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음
- □ 본 연구의 여성 정책수요자 조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모성보호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육아휴직 급여의 개편 방안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정책수혜 대상 여성들이 출산 및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을 들고 있음. 육아를 위해서 필요함과 동시에 여성고용 촉진 및 고 용 유지에 도움이 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력단절 예 방과 함께 휴직기간 중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육 아휴직 급여 인상의 가구소득별 증가 효과와 함께 육아휴직의 순소 득대체율을 함께 분석, 평가해야 함

- 한국형조세·급부모델을 이용한 분석에서, 우리나라 맞벌이가구의 육아휴직에 따른 순소득대체율을 보면, 가구소득이 130~143%, 147~154%인 가구는 순소득대체율이 0.90 이상이고 155~180% 가구도 0.80 이상임.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수령하게 되는 육아휴 직 이외에 가구소득 감소로 정부보육비 지원 확대 혹은 직접 보육으 로 인한 보육비 절감,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절감으로 인하여, 육아 휴직에 따른 가구순소득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따라서 향후 육아휴직제도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할 경우, 가구 소득 혹은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인상하는 방법보 다 적절한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한 정률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경우 육아 휴직급여를 임금에 연동한 정률방식(휴직기간에 30% 그리고 휴 직복귀 후 10% 지급)이면서, 임금월액이 419,0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19,000엔을 기준으로 정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이에 따라 노동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본급부액(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급부)의 상한액은 125,820엔임1)

#### ○ 육아휴직자의 보육시설 입소 우대

- 만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를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 직을 신청할 수 있고, 휴직기간동안에 고용보험에 의해서 월 50만원 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에 자녀를 직접 보육하기를 원함.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자가 전적으로 직접 보육을 하게 되면 아동발달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육아휴직에 따른 가구의 순소득대체율도 높아짐

<sup>1)</sup> 일본의 경우 2010년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기본급부액은 30%로 그대로 지급되나, 육아휴직 복귀급부금이 임금의 20%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됨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급 부액은 임금의 50%가 된다.

- 그러나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등과 같은 양질의 보육시설에서는 한 번 퇴소하면 재입소하기가 상당히 힘듬.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직접 보육하다가, 휴직 이후에 손쉽게 양질의 보육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즉, 육아휴직 이후 자녀를 이전에 이용했던 보육시설에 재입소시키려는 경우 입소순위에 가점을 주는 등 우대 정책이 요구됨
  - \* 일본의 경우 상당수의 보육시설에서 육아휴직 이후에 입소할 경우, 입소순위 조정지수에 한부모 및 고아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인 +20을 부여함(복지대상가구(+10), 아동이 장애아로 시설이나병원에 다님으로 부모의 취업이 어려움 경우(+10) 등임)

### 3. 정책효과

- □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육아휴직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 안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 도모
- □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통하여 맞벌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의 취업인센티브 제고

▶ 주관부처 : 노동부, 여성부, 기획재정부

# 성인지정책

1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균등 수혜 방안/정해숙 선임연구위원 44 14.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문유경 연구위원 48 15. 실업급여제도의 취약계층 포괄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1 1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개선 방안 /김영택 연구위원 55 17.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8	11.	국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전기택 연구위원	37
수혜 방안 /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44  14.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문유경 연구위원 48  15. 실업급여제도의 취약계층 포괄 방안	12.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안/김영옥 선임연구위원	40
제고 방안/문유경 연구위원 48 15. 실업급여제도의 취약계층 포괄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1 1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개선 방안 /김영택 연구위원 55 17.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8	13.		44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1         1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개선 방안       / 김영택 연구위원       55         17.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8	14.		48
/ 김영택 연구위원 55 17.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8	15.		51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58	16.		55
18.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김경희 연구위원 62	17.		58
	18.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김경희 연구위원	62

## 국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수행과제명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과제책임자: 전기택 연구위원 Tel: 02-3156-7178, e-mail: junkt@kwdimail.re.kr

#### 요 익

세계화 및 국제 경쟁의 심화에 따라 국가 성평등 수준 개선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수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아 향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 지수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세계화와 국제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는 양성평등 수준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양성평등 수준 개 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관 리,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 등을 위해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 지수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연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첫째,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제 성평등 지수 하위 지표를 연계하고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국제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남녀권한척도(UNDP), 성격차지수(WEF) 등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정책기본계획의 세부정책목표와 국제 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를 연계하고 그것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현재 여성부가 개발하고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에 국제 성평등지수의 하위지표를 포함하고, 덴마크 사례와 같이 해당 지표의 담당 부처를 지정,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임
- □ 둘째,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 우리나라의 국제 성평등 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제 성평등 지수의 예상 순위 등 모의실험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수의 하위 지표별 목표를 연차별로 설정, 추진해야 할 것임. 그리고 국제 성평등 지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 성평등 지수를 관련 부처의 성평등 정책 관련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성 인지 예산제도 등과 연계・운영해야할 것임
- □ 셋째, 국제 성평등 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위에서 제언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남녀권한 척도 하위 지표의 연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여성부가 추진 중인 국가 성평등 지표 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녀권한척도 등 국제 성평등 지수 및 하위 지표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국제 성평등 지수

및 하위 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 성평등 지표 센터(가칭) 등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 정책효과

국제 성평등 지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기대되는 정책 효과를 다음과 같음.

- □ 첫째, 국가 성평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함.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 성평등지수와 국가 성평등 정책의 연계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성인지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에서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둘째, 국가 성평등 수준의 개선이 가능함. 국가 성평등 정책과 국제 성평 등 지수의 연계, 국제 성평등 지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관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양성 평등 실현이 가능하고, 성평등 분야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여성부(정책총괄과)

## 성인지 예산서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Ⅲ):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dimail.re.kr

#### 요 약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올해 국회에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재원배분과 관련된 성별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예산문서로서의 의의를 가짐. 그러나 제도 시행 첫 해이니 만큼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올해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해임.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성별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최초의 예산 문서이며, 지난 10년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성 주류화 전략의 예산과정으로의 확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성인지 예산 활동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성평등 정책의 하나이지만, 성인지 예산서가 안정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음.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서의 형식, 즉 예산이라는 언어를 통해 보여주는 정부의 공식 문서이며,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선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 2. 정책의 추진방향

- □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제26조)로 정의하고 있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적 분석 보고서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함. 그러나 올해 제출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과 무관한 단순 사업 설명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음.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제출되었지만,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취합한 것이어서 정부가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왔고, 차기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지,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들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없음. 각 부처가 제출한 사업별 설명 자료는 각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한 통계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시된 통계에 대한 설명,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제도적, 구조적 원인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 등 분석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
- □ 제도 도입 첫해이므로 제도적 여건의 미비와 사회적 공감대의 폭이 좁은 현실적 요인이 작용했으리라고 보지만, 향후 성인지 예산서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예산사업 계획서의 성격을 가지는 문서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인지 예산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 □ 첫째,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을 위한 정부의 비전, 목표, 그간의 재원배분 추이, 차기년도 재원배분 방향, 그리고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등을 포괄하는 총괄부분이 포함되어야 함. 부처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한 형태 이상의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문서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함

- □ 둘째, 성인지 예산서에 사업별로 포함되는 분석대상 사업은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업(성별영향분석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재원이 성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함.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정책사업은 사업별 분석보다는 예산서의 총괄파트에서 전체 예산의 추이와 재원배분의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셋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업무가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여성부에 성인지 예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함. 여성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주관하며, 기획재정부는 지침 및 양식, 부처간 협의 및 예산서 심의 업무를 주관함.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와 여성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작성함
- □ 넷째, 사업별 성인지 예산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기실시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성인지 예산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된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단계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포괄하되, 점차적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사전과정으로서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3. 정책효과

□ 올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경험은 담당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별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 궁극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과 재원배분 구조를 성평등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담당자들이 자신의 사업을 성평등관점에서 되돌아 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개선의 효과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임
- □ 또한 국내에서의 성인지 예산서의 성공적 시행과 정착 경험은 앞으로 개발원조사업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1990년대 중반 성인지 예산 활동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ODA에서의 성 주류화는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인지 예산 활동은 상당한 강조점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임. 성인지 예산서의 발전 경험은 개발원조사업에서 성인지 예산 활동을 확산해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성인지 예산서 발간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국가들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 성인지 예산서의 지속적인 발간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재원배분의 흐름과 추이를 가시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임. 성평등은 모든 선진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음. UNDP, WEF(World Economic Forum) 등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 상에서 한국의 위치는 경제발전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보고,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과의지의 적절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 이를 통해 경제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성평등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임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

▶ 관계부처 : 여성부(성별영향평가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균등 수혜 방안

수행과제명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 인지적 분석

과제책임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jung@kwdimail.re.kr

#### O 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설치 · 운영되고 있으나,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용률의 성별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금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성별 균등 수혜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 1. 필요성 및 목적

□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2009년 현재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설치 · 운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용률의 성별 차이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아래 2008년 8월 국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시 장애여성과 장애남성을 동일한 비율로 고용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부터 남녀 균등 수혜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 정책의 추진 방향

- □ 첫째,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 불리함을 가진 장애여성의 적극적인 노동 권 확보를 위해, 경증남성장애인에게 수혜가 편중되어 있는 현행 의무고 용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 의무고용 여성장애인 채용목표제 실시(목표도달까지 점진적으로 채용을 증대)
  - 장애여성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여성장애인 고용 시 일정배수 고 용으로 인정)
  -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범주의 조정(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을 주 대상으로)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원화된 의무고용제 운영 실적 통합관리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은 장애남성의 3분의 1수준이며, 이러한 성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의무고용제 운영의 남성 편향성은 장애인 고용률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됨. 2008년 등록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3.7%로 남성 (47.6%)의 절반수준임. 등록장애인 취업자중 의무고용으로 취업된 비율은 여성 6.9%, 남성 15.7%로 장애여성들이 장애남성만큼 의무고용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낮은 취업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둘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 인지적 운영을 위한 시 스템 구축
  - 등록장애인 중 생산연령인구의 여성비율을 성 형평성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세부사업별 집행실적에 대한 성별 보고체계 구축 및 실적 관리
- □ 셋째, 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 기능훈련에 있어서 장애여성의 훈련기회 확대
  - 5개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장애여성 기능훈련 확대계획 수립 및 이행점 검 제도화

- 장애여성을 위한 훈련직종 다양화와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훈련수요 발굴 노력 강화
- 출·퇴근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파견교육장 운영으로 장애여성의 접 근성 제고
- □ 넷째,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장애여성전용 훈련과정 설치 및 통합교육지원 체계 구축
  - 한국폴리텍 여자대학을 장애여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시범기관으로 선정·운영
  - 전국 4개 권역별로 1개소씩을 지정하여 장애여성의 통합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
- □ 다섯째, 장애여성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구축사 업'에 장애여성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사업 추진

장애여성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충분한 훈련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함. 2008 년 현재 장애여성의 67.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장애남성에 비해 학력수준이월등히 낮기 때문임. 그러나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전체 수료생 중 여성비율은 27.6%로 노동부 권고 기준인 30%에 못 미치며, 기능훈련 수료생중 여성비율은 23.1%에 불과함.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여성비율은 이보다 낮은 10.9%에 불과함최근 들어 장애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태도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음. 2008년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기능훈련을 받기 위해 직종선정평가에 응시한장애여성은 21.5%로, 2006년보다 6%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고, 직종선정평가 합격률이나 직업능력개발센터 입학률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2% 포인트 가량더 높게 나타남. 뿐만 아니라 직종선정평가에 응시한 장애여성의 학력을 보면, 초급대학 이상이 32.2%로 장애남성(27.7%)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 이처럼 주로 고학력장애여성들이 기능훈련에 참여하는 사실은, 장애여성의 경우 낮은 학력수준이 직업훈련을 받고자하는 욕구나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함

□ 여섯째, 창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창업지원 전 담부서 신설

창업지원 사업들 중 담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영업장소 전대사업은 성 형 평적 수혜를 보여준데 반해, 제도적 개입 없이 장애인 개인의 여력에 맡겨놓은 창업자 금 융자사업에서는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이는 장애여성의 창업욕구가 장애남성에 비해 적지 않으나, 사회경제적 조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3. 정책효과

□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과 창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 지고, 직업훈련 참여기회가 높아짐으로써 장애여성의 자립 기반 폭이 한 층 넓어질 것임. 나아가 이 결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의 실효성과 성과를 제고하게 될 것임

▶ 주관부처 : 노동부

▶ 관계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가정폭력 예방 및 치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수행과제명: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과제책임자 : 문유경 연구위원 Tel: 02-3156-7132, e-mail: mizmoon@kwdimail.re.kr

일 년에 2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0.75%인 156억에 불과함(2007년 기준).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중대하고 우선분야에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예산소요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1. 정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정서적이고 물적인 유대관계를 갖는 가족 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구조적이며, 지속적이고 은폐되기 쉬운 특징을 가짐. 경찰 신고율도 매우 낮아 실제 발생률을 파악하기 어려움.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피해 양상과 심각성을 살피고,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 가정폭력의 감소와 피해자 치료를 위한 정부 예산 증액
  - 가정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가정 폭력 중 아내 폭력이 가장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가정 폭력 중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범위를 좁혀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함. 가정 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2조 821억으로 추정됨. 폭력으로 인한 치료와 상담소 등 이용,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 직업훈련프로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6,834억으로 추정됨. 이 중 의료비용이 6,117억으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함. 취업/가사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간적, 정서적 비용 등 간접 비용은 1조 3천9백8십7억으로 추정됨
  - 일 년에 2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0.75%인 156억에 불과함(2007년 기준). 정부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인 174조 9852억의 0.009%에 불과함
  - 가정폭력 감소와 피해자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수반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임
- □ 가정폭력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의 집중적인 지원 대책 필요
  - 사회조사에 의하면 일년에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가 약 50만명으로 집 계되고 있으나 같은 해에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사회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여성은 약 1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어 나머지 약 40만여명은 전혀 정부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집중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범죄행위 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움. 가해자의 신상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범죄통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상황과 피해자의 보호 에 관련된 통계의 개발이 필요함

#### □ 기존 가정폭력 조사의 개선

- 여성부에서 실시한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는 매우 중요한 조사로서 가정 폭력의 모든 유형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남편의 아내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 남편의 아내폭력 33.1%, 아내의 남편폭력 27.1%, 상호폭력 19.9%로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짐. 반면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69.3%가 남편의 아내폭력인 반면 아내의 남편 폭력은 2.9%로 아내에 대한 폭력이 훨씬 심각함.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는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설계와 분석이 필요함

### 3. 정책효과

] 우선정책분야에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치료	정책의	실
효성 제고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벼	비용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	관련 여	l산의 ·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	계산소요액	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늘 것임

▶ 주관부처 : 여성부, 법무부

## 실업급여제도의 취약계층 포괄 방안

수행과제명 : 실업급여제도 예산의 젠더분석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dimail.re.kr

실업급여제도로부터 여성의 수급이 여전히 낮음. 여성 등 취약계층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경험에 기반하여 취약계층을 다각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업급여제 도의 coverage 제고가 기대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7월 현재,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92,409명으로 전년대비 24.0%가 증가하였고, 여성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현재 수급자 중남성은 55%, 여성은 45%로서 여성의 실업급여수급이 취약한 상태임
- □ 실업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데, 여성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고용불안정, 저임금, 성차별, 경력 단절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 가사, 돌봄 노동 등의 역할을 사회구조적으로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와는 다른 입장임. 실업급여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실직 상황이 남성 근로자의 실직 상황과다른 점과, 여성들의 구직활동이 노동시장의 주류인 남성들과는 다른 경

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야 함. 수급률 등에서의 표면적인 수치만 가지고는 이러한 민감성을 들여다볼 수 없음.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가여성 등 취약계층이 처한 사회적 위치와 다른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취약계층을 다각적으로 포괄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첫째, 실업상태인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력, 연령, 기술수준 등 여성들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일대일 취업상담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들이 재취업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며, 서비스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고, 실업급여제도의 예산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험료 납부자임
- □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lump-sum 방식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여성 가구주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여성 실업자, 아동양육의 의무가 있는 여성 등, 구직급여만으로는 실업상태를 견디어나가기 힘든 수급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구직급여에 더해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일괄지급금(lump-sum payment)을 지원하여, 이들이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 셋째, 출산, 돌봄 노동 등의 실직 사유인 경우 제공되는 급여 항목의 신설.
  - 여성이 출산이나 양육 등으로 실직 시, 별도로 신설된 다른 사업을 통해 서 급여를 받게 한다면, 재원 증가의 필요성 없이, 제도가 여성들의 입 장을 제도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됨. 근로자 입장에서도 성별로

공정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기존의 실업급여제도 사업에서 별도의 예산증액 없이 특정 항목의 추가만을 통 해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음

- □ 넷째, 실업급여제도 집행의 일관성을 통한 공정성 및 예산 확보
  - 실업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서비스 담당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여, 자원이 비일관성으로 불공정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전달자의 재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다섯째, 여성 근로자의 정보에 대한 통계 항목 세분화
  - 여성 근로자들의 경험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차별 등 여성 근로자가 겪는 독특한 경험이 통계적으로 반영되어 공 식적인 정보로 축적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법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이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음
- □ 여섯째, 부정수급액 환급을 통한 예산 확보
  -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을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부 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이나 모니터링 제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절감된 예산은 실업 급여 제도의 성인지적인 설계 및 운영에 쓰여질 수 있음

### 3. 정책효과

□ 여성 등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처한 상태와 경험을 고려하여 이들이 실업급여제도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실업급여제도 의 coverage가 높아질 것임. 또한 부정수급액 환급 등을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해질 것임

▶ 주관부처 : 노동부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대상자 선정 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예산 추정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김영택 연구위원 Tel: 02-3156-7177, e-mail: ytk@kwdimail.re.kr

#### 요 약

일반건강검진 대상의 사각지대인 만 35세-39세사이의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건강보험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만 40세 미
만 전업주부들이 제외되어 이들의 건강검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남
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며 가족의 대표자로서 세대주의 지
위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데 직장가입자와 세대주는 건강검진의 수
혜대상자로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에 피부양자들은 나이 만 40세 미만이
면 건강검진 필요성이 있더라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가정에서 다중 역할로 인하여 전업 주부의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 발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과 노인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 경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 중반 및 후반 연령대인 전업 주부의 일반건강검진은 필수적임 특

히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만 35세-39세 저소득층의 전업주부 일 경우 질병 발병의 징후가 있어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만 40세 기준의 보건학적 근거 타당성과 만 35세-39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전업주부의 성인지적 예산 추계를 통하 여 일반건강검진 혜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일반건강검진 대상의 사각지대인 만 35세-39세사이의 여성, 특히 전업주 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40세 이상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낮추고 신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성비 불균형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 가입자 및 세대주는 만 40세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만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 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음. 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만 40세 기준은 보건학적 근거로 설정 되었다고 하나 분석결과, 그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음 □ 만 35세-39세 사이의 전업주부가 몸이 아픈 경험이 늘어나고 산후 우울증 과 더불어 가사와 자녀 양육, 돌봄 관련 스트레스는 각종 만성 질환 및 암 으로의 전환 및 발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질병 조기예방측 면에서 만 35-39세 사이의 전업주부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의 혜택을 주 어야 함 □ 성인지적 예산 성비 불균형 해소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고서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혜 대상자는 여성이 남 성 보다 적고 건강검진 수검율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 일반건강검진 현황(2003-2007)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상인원 및 수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 예산 지급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음

- 1차 일반건강검진 및 2차 건강검진 비용을 활용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 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만 40세 미만인 여성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의 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대상인원과 건강검진 1차 및 2차 수검률에 따른 예산 추계를 실시함. 그 결과 최근 2007년 기준 1차 검진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검진 수검율이 30%대를 고려하여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검진 수검율 50%와 2차 검진 수검율 25%의 대상인원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45,238,750,830 원으로 나타남
-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대상) 만 35세-39세 전업주부를 위한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 소요완화 예산 추계를 실시함. 실시 결과 2007년 기준 1차 검진 여성 대상인원 수검율이 50%대이고 2차 검진 수검율이 30%대를 고려하여 가상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근접한 1차 검진 수검율 50%와 2차 검진 수검율 25%의 대상인원 과 가상수검율을 적용하면 총 소요예산은 10,596,963,650 원으로 나타남

#### 3. 정책효과

□ 일반건강검진 대상의 사각지대인 만 35세-39세사이의 전업주부가 무료 일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 중 만 40세 이상 기준을 만 35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질병의 조 기 발견 가능.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의료지출비용을 줄이게 될 것임. 나 아가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수행과제명 :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규모 추정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dimail.re.kr

#### <u> 인</u>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9개 분야에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이 창출할 일자리의 80%가 남성일 자리로 추정됨으로써 여성일자리 친화적인 사업 보강을 제안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2009년 1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9개 분야에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계획을 발표함. 이 발표에서 나타나는 녹색뉴딜사업의 첫 번째 특징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재정사업이라는 점 임. 두 번째는 녹색과 뉴딜(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용어를 결합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녹색뉴딜사업의 주요목표의 하나가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나만큼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취업률과 취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 그런데 녹색뉴딜사업에서의 여성 일자리 규모는 총 176,598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된 전체 일자리 수는 88만 개인데, 이는 정부가 추산한 91만개의 일자리보다 약 3만개 적은 수치임. 이 차이는 본고의 추정작업에서 당초 2009년 1월에 발표되었던 사업안과 비교하여 9월 현재 시행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제외하였기 때문임
- □ 녹색뉴딜의 하위 사업별로 여성일자리의 비중을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부문의 여성일자리 비중이 각각 13.6% 18.0%로 건설관련 사업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사업의 경우 R&D 및 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 분야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부문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과 역량강화가 과제로 대두됨. 환경보호 분야에서 여성일자리의 비중이 22.8%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 분야 일자리의 대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이나 쓰레기 수거사업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임. 따라서 향후 4년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녹색뉴딜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질 일자리 중 여성일자리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2. 정책의 추진방향

□ 첫째, 여성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분야를 보완하는 등 녹색뉴딜 사업계획의수정이 필요함. 여성의 취업유발효과가 높으면서도 여타의 녹색산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녹색뉴딜을 보완하고, 그효과를 평가하여 꾸준히 재설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방향에 맞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여성의 취업유발효과가 높은(남성 4.6명/10억원, 여성 8.4명/10억원) 의료 및 보건서비스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임. 또한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의 하나인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1조원에

달할 정도로(최홍진, 2008) 환경오염으로 유발되는 질병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큼. 그러나 현행 녹색뉴딜사업에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누락되어 있음. 향후 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보건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여 패키지화해 추진한다면 녹색뉴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둘째, 녹색기술 분야의 여성참여 증진 방안을 마련함. 즉 여성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녹색뉴딜사업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의 추정 결과, 녹색뉴딜사업중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부문의 여성일자리비중이 건설・SOC분야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남.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사업의 경우 R&D 및 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 분야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낮기 때문 임. 에너지부문을 포함하여 녹색기술 분야로 여성 기술인력의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미국의 사례이지만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분야인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60%를 넘는 고객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적다고 여겨져 왔던 화물·자재운송과 생산·공정관리 분야에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풍력에너지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그 시작단계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따라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WISE사업이나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WIE)사업 등에서는 물론이고 기타 여성 공학인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에서 환경복원기술, 재생에너지활용기술 등 녹색기술분야가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임. 또한 이렇게 육성된 재원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WANTO(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와 같은 프로그램과 법률을 마련하여 일

### 3. 정책효과

- □ 이와 같이 재정사업의 편익이 특정 성에게 치우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아울러 녹색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은 따로 분류하거나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분배하게 되면 녹색뉴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나아질 것임. 현재 녹색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는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업 관련 사업이 약 48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환경보호 분야로 약 29만개로 추산됨. 에너지관련 분야는 약 8만개로써 전체 일자리의 10%에 미치지못함.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근로내지는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우리나라 녹색뉴딜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건설업 관련 일자리 내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한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음.
- □ 즉 환경보호 분야와 에너지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재정투입을 함으로써 현재 건설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균형잡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사용에서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를 늘림으로써 녹색뉴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임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수행과제명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과제책임자 : 김경희 연구위원 Tel: 02-3156-7187, e-mail: kh99kim@kwdimail.re.kr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국내에서는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와 함께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되고 있음.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분석 이후 참여하는 기관과 대상 과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성 주류화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채택한 주요 전략의하나로, 정책과 예산에 성 차이를 고려한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것임. UN과 EU가 성 주류화를 지난 10년간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한 이후 성 주류화 관련 제도는 빠르게 확산되었음. 이 정책은 외국에서 사회정책에 통합된 도구로 실행되었고, 거버넌스의 중요한 도구로인식되었음. 국내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 특히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 육청이 참여하면서 대상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환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성 주류화의 실행주체인 공무원과 전문가, NGO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제·개정과 성 주류화 실행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성 주류화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료, 전문가, NGO 활동가가 실행주체가 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조항이 법제화된 이후 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문가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는 반면, NGO 활동가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성 주류화가 한국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일반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집행되도록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NGO 활동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여성부 장관은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위한 연구회 또는 T/F팀을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기구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음
- □ 성 주류화 실행주체 네트워크 운영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성 주류화 실행주체 구성'에서는 실행주체 네트워크 구성형태를 삼각연대 기본형으로 할 것인지, 확장형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결 정함. 성 주류화 전문가가 성 주류화 T/F팀을 구성하고 일차적으로 분 석대상사업을 여성부서 공무워, NGO와 의논하여 결정함
  - 2단계 '대상정책에 대한 성 인지적 문제 파악'에서는 실행주체들이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낮다면 사전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단계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조사·관찰·기록'단계에서는 실행 주체들의 성 주류화 인식, 경험, 태도와 그것의 변화에 대해서 조사, 관 찰, 기록함
- 4단계 '성 주류화 실행과정에 대한 반성, 성찰'에서는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기회를 갖음
- 5단계 '성 인지적 정책개선 대안 마련 및 환류'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한 대상정책의 문제 또는 이슈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참여자들 스스로가 집단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함
- □ 한국 성 주류화의 주요 도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성인지 교육이고, 여성부가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성 주류화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방안 중 법령이나 지침 등을 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주도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 성별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명시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책환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의 책무성을 높이고 환류실적을 높여 이 제도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을 제정하거나「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할 것임. 특히 정책환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환류를 위한 계획서 작성, 정책환류 실적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정책환류 담당자지정, 정책환류 담당자 교육 등의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 현재 여성부의 성 주류화 관련업무는 성별영향평가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함.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과 대상과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또한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주요 기능의 하나로 성별영향평 가의 정책환류에 대한 실적 점검사항을 두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3. 정책효과

□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수준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년간 성 주류화와 성인지 예산을 주제로 각종 국제심지엄과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국가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성 주류화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음. 더욱이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원조 공여국으로서 그동안 개발해 온 성 주류화 제도운영의 경험이 활용되거나 국제적으로 홍보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해볼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부가 협력하여 한국의 성 주류화 제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성 주류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임. 특히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일반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성 평등을 향상시키면서 정책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주관부처 : 여성부(성별영향평가과)

# 평등문화

19.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 (광역 20%, 시·구 30%, 군 20%) 도입	
	/김원홍 연구위원	69
20.	남성의 젠더의식 검사도구 개발	<b>7</b> .
	/이수연 연구위원	74
21.	양성평등한 남녀공학교육을 위한 중등학교 교사 현장 연구 지원/정해숙 선임연구위원	77
00	, = • = , , = • , , = = = , , , =	, ,
22.	성평등 실천 문화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방송발전기금 지원/안상수 연구위원	82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 (광역 20%, 시·구 30%, 군 20%) 도입

수행과제명 :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원홍 연구위원 Tel: 02-3156-7101, e-mail: kwh56@kwdimail,re,kr

#### 유 야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임.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 현재 우리나라 여성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 0명(0%), 기초자치단체장 5명(2.2%)으로 저조한 실정임. 2009년 12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0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할당제는 없는 형편임.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광역 20%, 시, 구 30%, 군 20%)도입하도록 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지방화시대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
- □ 그간 여성구청장이 있는 송파구청장이 이루어온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여성친화도로조성, 생리기간 중 수영장여성이용료 할인, 아

토피없는 어린이집, 주자장내 여성우선주차구획, 여성전용주차장 핑크존, 이용시간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화장실건립과, 1동 1공공시설확충 및 안전도시구축 중 특별히 어머니들의 관심사인 어린이안전정책추진 등을 통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쳤고,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기본인식하에 산전산후 건강교실, 여성사랑맞춤형 건강관리, 중년기 여성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200여개의 전문직업프로그램과 여성지도자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평가되어 2008년 『여성지위향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여성과 관련된 leading city 역할을 해 내고 있음

- □ 2009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0명(0.0%), 기초자 치단체장 5명(2.2%: 김영순 송파구청장, 박승숙 인천중구청장, 윤순영 대 구중구청장, 김은숙 부산중구청장, 이청 전라남도 장성군수)가 있는데, 지 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도입이 필요함
- □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 5명,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23명이 나왔음.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후보가 과거에 비하여 늘어난 것은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 정착되어 가면서 여성후보들도 자치단체장에 보다 많이 도전한데서 비롯된 것임. 당시 당선된 3명의 여성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모두 한나라당 우세지역에서 당선된 사람들로 향후 여성자치단체장 확대를 위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 □ 현재 2009년 12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10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 또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별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공천할당제는 없는 형편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도입이 요구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의무화 제도(광역 20%, 구.시 30%, 군 20%) 도입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시도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0%, 구. 시 30%, 군 2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됨, 서울의 경우를 예로 하여 살펴볼 경우 권역별로 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②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③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④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⑥ 종로구, 성북구, 중구, 용산구, ⑦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⑧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로 나누어 이중 1지역은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를 맞아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지역에 여성자치단체장 공천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는 방법이 필요함

####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공천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함. 그간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남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되어 왔음. 단지, 16대 총선이후 여성의 일부를 공천심사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11명중 공천심사위원중 4명(36.3%), 통합민주당은 12명의 공천심사위원중 0명(0%)이었음. 따라서 정당들은 앞으로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여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비율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 □ 여성정치인의 지속적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4월 9일 18대 총선이후 4월 19-23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음. 그 결과 유권자들은 여성후보가 출마한 의미에 대하여 "남녀평등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가 38.7%로 가장 많게 나타났음.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이 낮은이유에 대해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울리, "바람직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지금보다 증가해야 한다"가 62.1%로 가장 높았음. 여성국회의원 증가 방안으로는 "능력 있는 여성정치인 육성"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처럼 유권자들은 정당의 역할로 "여성정치인 육성" 및 "여성정치인 발굴"을 중요하게 생가하고 있었음. 그간 정당들은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를 도입했다는 명목하에 여성후보 육성 및 발굴이 소극적이었음.이와 관련하여 정당들은 당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치학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인적 풀을 확장해야 할 것임

#### 3. 정책효과

- □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확대
  - 2009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UNDP) 이 전 세계 10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8년 여성권한척도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 지수에서 한국은 0.54를 기록해 지난해(64위)보다 4계단 떨어진 68위에 머물렀음.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확대를 통해 여성권한척도를 높일수 있음

여성친화적인	지방정책의	확성화를	톳한	지밧젓치의	발전을	기합
1000	. 100-1-1	2072	o =	. 100.011		′ 1 🛚

-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생활정치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여성참여 확대는 필수적임. 전 세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위하여도 보다 많은 여성자치단체장이 나올 경우 보다 지역발전과 지역균형을 보다 바람직하게 보임

▶ 주관부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요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성부(정책총괄과) 등

▶ 관계부처 :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 남성의 젠더의식 검사도구 개발

수행과제명 :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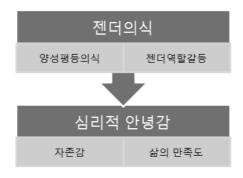
과제책임자 : 이수연 연구위원 Tel: 02-3156-7153, e-mail: @kwdimail.re.kr

#### 요 으

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 젠더역할갈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검사하는 도구를 개 발하여 남성들이 자신의 젠더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좀 더 균형적인 의식과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식개선 도구를 마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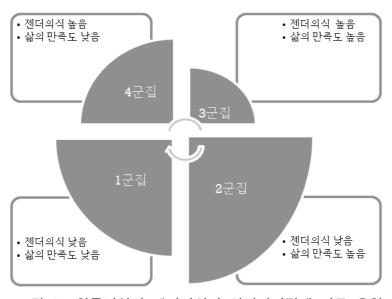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한국 남성들은 젠더역할갈등 수준이 높고 양성평등의식이 낮은 편임. 이는 남성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고 일가정양립이나 부모역할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장애가 됨. 따라서 이들의 젠더역할갈등을 낮추고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도록 정책적 중재가 필요함



<그림 1> 젠더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한국 남성들의 젠더의식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줌. 따라서 젠더의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젠더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국 남성들은 젠더의식수준에 따라 크게 네 집단으로구분되는데 젠더의식수준이 높아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III), 젠더의식수준이 낮아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I), 젠더의식수준은 낮으나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정도인 집단(II), 그리고 젠더의식수준은 높지만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집단임(IV). 이 중 I집단과 II집단에 정책 중재의 필요성이 큼



<그림 2> 한국남성의 젠더의식과 심리안녕감에 따른 유형

#### 2. 정책의 추진방향

□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통한 형식, 절차적 접근보다는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심리적 접근이 필요함. 자신의 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의식개선의 첫 단계임. 따라서 남성의 젠더의식과 심리적 안녕감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임
 □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남성 젠더의식 검사도구를 개발할 수 있음. 검사도구는 남성 젠더의식의 영역별 점수와 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로서, 검사결과로는 척도별 표준화된 점수, 검사자의 상대적 위치인 백분위와 유형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검사도구의 활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용으로 각각 개발하여 오프라인 용은 양성평등의식 교육이나 워크숍에서 남성들의 의식 점검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오프라인 용은 검사관련 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상업용 포털 등에 연계하여 개인이 혼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또 남성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문화센터 등에서 아버지 교육 프로

# 3. 정책효과

□ 자기진단을 통해 남성의식의 개선
□ 남성의식 개선으로 일가정양립정책 수용성 증가
□ 부성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가정의 효율성 증가
□ 남성의식 개선으로 직장에서 공정성과 효율성 증가

그램에서도 이 검사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여성부(성별영향평가과), 지자체의 여성정책 관련부서

# 양성평등한 남녀공학교육을 위한 중등학교 교사 현장 연구 지원

수행과제명 :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과제

과제책임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1, e-mail: hschung@kwdimail,re,kr

#### 요 약

남녀공학이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 전문 가인 교사들이 직접 남녀공학교육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개발할 수 있는 현장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및 경력점수 가산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임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1999년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명분으로 남녀공학 확대정책이 도입되었으 나, 실제 현장에서 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나, 성 평등한 교육을 위한 조치는 거의 취해진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에 따른 학생인구의 감소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남녀공학은 확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남녀공학이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
- □ 남녀공학에 관한 실증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현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줌. 남녀공학 중·고등학생 총 2,99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요 교과와수행평가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학 진학 시희망 계열에 있어서도 여학생은 인문계열, 남학생은 자연계열 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성 정형화된 모습을 보임. 학생들의 이러한 성차는 남녀공학에서는 다소 완화되었어야 하나 남녀별학생과 동일한 양상을 보 여 남녀공학이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 러남

- □ 또한 남녀공학교육이 학생들의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차 및 성역할의식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모두 남녀공학생보다 별학생이 더 진보적이었고, 사회성의 경우도 학교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양성평등의식이나 사회성 발달과 같은 비학업적 요인들에서 남녀공학 교육효과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음
- □ 한편, 중등학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담회(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서도 남녀공학교육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음. 교사들은 학생 성별에 따라 수업태도와 선호교과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업과 훈육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수행평가를 비롯한 내신에서 여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우수한 현상이 남학생의 남녀공학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점등 여러모로 공통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교사들은 이성교제 및학교폭력 등에 있어서 남녀공학의 차별적 특성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녀공학교육을 진단하고 있음에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모색하는 단계에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 학교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사회문 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 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때만이 성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성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됨. 따라서 남녀공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적 개입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교사가 직접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진단하고 대안을 개 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이와 같은 기회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남녀공학을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데 효과적인 정책 전략이 될 것임

# 2. 정책의 추진방향

- □ 교사가 주체가 되는 현장연구의 필요성 강조 및 연구 여건의 조성
  - 학교가 양성평등한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드러나는 젠더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함.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현장연구의 필요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됨. 현장연구는 다양한 남녀공학교육 현장의 이슈들을 다룰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및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 교사 연구비 지원 및 경력점수 가산을 통한 현장연구의 활성화

- 교사 현장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실적으로 교사가 수 업을 비롯한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연구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으로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현장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경력점수에 가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연구에 도전하는 교사들의 노력을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 □ 연구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을 통한 남녀공학교육의 실질적 개선 유도

- 남녀공학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 현장연구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여 공유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현장연구가 문서상의 작업만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를 비롯하여 연구를 주관하는 관련 부처, 그리고 연

구 성과를 공유하는 모든 집단이 이 점을 숙지하여 현장연구의 성과가 남녀공학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준비하여야 함

# 3. 정책효과

- □ 남녀공학교육의 양성평등성 제고
  - 남녀공학이 양성평등 한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회문화 적으로 형성된 성 정형화된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적 개 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부딪 히는 학생들의 성별 차이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침 등의 방안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남녀공학 교육이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게 될 것임
- □ 교육계 내부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자발적인 추진 동력 마련
  - 현재 교육계에서 양성평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실현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단순히 남녀 간 교육연한의 차이가 없다는 것만으로 평등이 실현되었다고볼 수는 없음. 교사 현장연구의 실시는 양성평등 교육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의 진행에 있어서 교육계의 자발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 현장에 기반한 남녀공학교육 관련 자료의 확보
  -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책연구의 형태가 대부분이고, 교육전수통계나 학업성취도평가 통계와 같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녀공학교육에 관한 주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못함. 현장연구는 남녀공학교육의 실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들이 현실에서 감지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단위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구체성을 충족하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해석과 담론들은 남녀공학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성평등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근거가 될 것임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시 ·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등

▶ 관계부처 : 여성부 등

# 성평등 실천 문화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방송발전기금 지원

수행과제명 :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Ⅰ): 사적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 안상수 연구위원

Tel: 02-3156-7188, e-mail: ahnss@kwdimail.re.kr

#### 요 약

사적 생활영역인 가정에서 성평등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의 동등한 가사참여에 대한 사회적 규범 제시와 그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가 시급함. 이를 위한 미디어 부문에서의 정책적 개입의 한 방안으로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의 모델을 제시하거나 성평등 실천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라 할 수 있음. 성평등의식 형성과 실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영역 또한 가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사적 영역이어서 정책적 개입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기도 함. 가정에서의 성별 역할 수행역시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은 가정에서의 성평등의식과 실천을 중재하는 것이 주관적 규범, 즉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임. 주관적 규범은 가족들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친구, 동료의 의견, 나아가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

일 수 있음. 특히 미디어가 성평등의식과 성평등 실천에서의 사회적 규범 제시와 가치부여 기능은 오래 전부터 주목되어 왔음

- □ 북경 유엔세계여성회의(1995) 및 48차 여성지위위원회(2004)에서는 TV 등의 미디어에서의 이와 같은 영향력을 고려하여 양성 평등한 사회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과 성 평등한 미디어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3차례에 걸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된바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1항(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통하여 남녀 평등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양성평등)에서 방송이 특정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을 옹호, 합리화,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여성부에서는 2001년 이후 2008년까지 매년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텔레비전등의 미디어 속에서의 성차별적 묘사나 성차별적 언어표현, 성차별적 이미지, 프로그램 등장인물 및 구성에서의 성별 간 불균형 등에 관한 다양한성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해 오고 있고 아울러 여성부에서는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녀평등방송상을 제정하여 11년째 시상해 오고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여성부에 한정 되어 있고, 미디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과는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그 정책적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 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음
- □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규범제시와 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거나 시상을 하는 제도를 넘어서 성평등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방송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등에 쓰 여 지고 있는 바, 방송발전기금 중 일부를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할애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의식 향상 및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에 관한 사회적 규범제시와 가치부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 2. 정책의 추진방향

- □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의식 제고 및 생활속 성평등 실천의 모델 제시
  - 대다수 가정에서는 거의 매일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디어는 가족 레크리에이션의 수단으로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함. 미디어는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지만, 성평등한 남녀관계를 규정하고,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을 제고할 수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다양한 매체와 장르들을 통해 성평등의 보편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생활속에 성평등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미디어 환경 개선
  - 가정 등의 사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 제고와 성평등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 수단이 매우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은 필수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운용중인 방송발전기금 의 활용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금지원에 관한 여성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 3. 정책효과

- □ 성평등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
  -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통한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활성화됨으로써 미디어 속의 성차별적 묘사가 감소할 것이며, 성평등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평가 방법, 미디어의 순기능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 성평등의식 제고 및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 부여
  - 성평등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는 성평등의식 향상 및 성평등 실천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게 됨에 따라, 성평등의 사회적 규범을 제고하고 생활 속의 성평등 실천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성평등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임
-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활성화 및 여성정책 추진 방향의 다변화
  - 그 동안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관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향후 성평등한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또한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여성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과 협력 및 연계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주관부처 :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 관계부처 : 여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 다문화·여성인권안전

23.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 /이선주 연구위원	89
24.	다문화 전문인력 역량 진단 및 모델 개발 / 민무숙 선임연구위원	94
25.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방지 대책 /이미정 연구위원	97
26.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102

#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

과제책임자 : 이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66, e-mail: leesut@kwdimail.re.kr

#### 요 약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부응하는 이주민 통합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통합 및 협력체계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한편, 통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모색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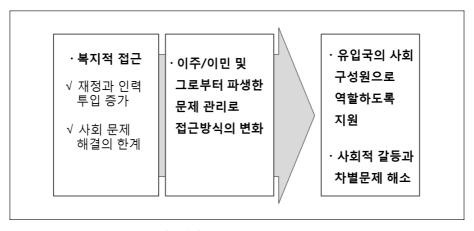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에서	]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주민	통합에
대한	논의	가 미흡형	한 실정임					

- □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유입됨에 따라 새로운 사상, 종교, 문화가 유입국 사회의 가치, 풍습, 문화, 전통 등과 갈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며,
- □ 이주민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배제, 사회적 위화감이 형성될 우려가 제기됨

□ 지금까지의 다문화관련 정책이 이주민을 복지수혜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하고, 내국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 재정과 인력투입은 많으나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복지적 접근에서 이주/이민문제를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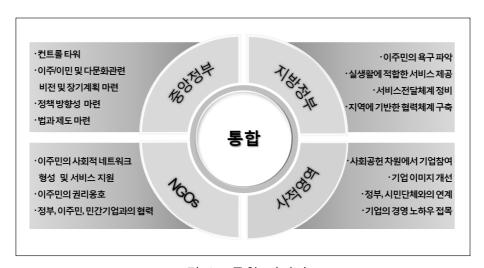
<그림 1> 이주/이민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

- □ 통합적 관점에서 이주/이민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정착과 통합 에 필요한 요소 파악
- □ 통합의 저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통한 이주민의 효율적인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 통합 영역의 구분

#### <표 1> 이주민 통합의 장애요인과 극복을 위한 이니셔티브

통합 영역		통합의 장애 요인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언어통합		- 언어적 능력 미흡	- 일상생활을 위한 언어교육 - 취업을 위한 언어교육
정치적	덕 통합	- 선거 참여 - 정치적 대표성 - 정당결성 및 참여	-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경제적 통합		<ul> <li>- 빈곤</li> <li>- 실업</li> <li>- 취업을 위한 학력, 기술, 경력 에 대한 인정 미흡</li> <li>- 주거</li> </ul>	<ul> <li>이주민의 취업경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li> <li>본국 학력, 기술, 경력 인정</li> <li>취업 멘토링</li> <li>취업훈련 기회 제공</li> <li>주거 지원</li> </ul>
정체성 통합		- 이주민 및 그 2세대의 소속감과 정체성 갈등	- 심리적, 정서적 지원 - 자존감과 다중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 이민 2세대를 위한 정체성 형성 멘토링
문화적	덕 통합	- 이주민 및 그 2세대의 가치관과 신념체계 등의 혼란 및 갈등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을 통한 가치관과 신념체계 정립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향상
	접근성	<ul> <li>사회적 소외 및 분리</li> <li>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li> <li>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에 접근성 결여</li> <li>내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취약</li> </ul>	-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적응교육 - 지역 사회의 체육행사, 축제 및 문화행사, 학교행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사회 통합	가족	- 가정폭력 - 한국 시부모 등과의 갈등 - 이혼 증가와 가족 해체 -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 자녀 보육 문제	<ul> <li>가정폭력 상담 및 쉼터 제공</li> <li>배우자 및 시부모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li> <li>부부관계에 대한 상담 및 멘토링</li> <li>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와 부모됨에 대한 교육</li> <li>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멘토링</li> <li>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li> </ul>
	사회 구조 및 제도	- 이주민 권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취약 - 정책추진체계의 중복과 복잡성	<ul><li>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시정</li><li>다양성과 차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li><li>정책추진체계의 체계화</li><li>지역중심의 정책 실시</li></ul>
	시민 의식	<ul> <li>단일 민족 이념을 토대로 한 패쇄적 태도</li> <li>이주민에 대한 인종· 민족적 편견과 차별</li> <li>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관용의 부족</li> </ul>	- 대중매체, 평생교육프로그램, 복지 및 문화센터교육 등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 - 관용을 가진 열린 사회 지향

- □ 이주민의 사회적 연대감 형성과 역량 강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주민의 생활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이주민의 생활터전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시민단체, 민간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주민 통합을 위한 거버 넌스의 형성



<그림 2> 통합 거버넌스

#### 3. 정책효과

- □ 이주/이민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관리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정착 과 통합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국제적 인권문제를 유발하는 불 법이주과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범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음
- □ 궁극적으로 이주민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와 배제, 이로 인한 사회 적 위화감의 형성 등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현행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중복성과 업무의 비효율성, 추진주체 간의 낮은 협력 수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 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 관계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문화관광체육부

# 다문화 전문인력 역량 진단 및 모델 개발

수행과제명 :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 민무숙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2, e-mail: msmin@kwdimail,re,kr

#### 요으

다문화 전문인력의 역량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하여 다문화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다문화 관련	정책 시형	생의 중주적	역할을 さ	하며, 이주	민과 내국당	민간 (	이해와
상호 소통의	매개인력	으로서 현지	배 이주자	- 지원 및	다문화 관	련 기	관에서
현재 종사하	고 있는 역	인력들의 중	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최근 각 부처의 주도로 이들 다문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증가함으로 써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인력들이 배출되고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이 갖 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한 채 단기간에 시행됨으로 써 효과성이 미흡함
- □ 특히 모든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개발부터 시행과 배치까지 단년 도에 이루어짐으로써 수요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연구의 과정이 이루어지

못한 채 시행되어 사업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업무 분야별 요구되는 핵심역량의 요소나 전문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과정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이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다문화역량 모델을 가
발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이들 인력들의 다문화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
점 만점에서 3점이 조금 넘는 중간 수준의 역량 수준을 확인함. 특히, 인식
측면의 자기평가 결과는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는

- 다문화 전문인력의 인식과 태도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므로 다문화역량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
- □ 또한 연구결과, 다문화 인력이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에 반해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현재 실시 되는 교육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중요하다고 봄
- □ 따라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요소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 교육에 환류함으로써 실질적인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다문화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다문화역량의 요소와 분야별로 특수하게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 모델을 수립함

- 기본적 다문화역량요소로는 분야에 무관하게 모든 다문화 전문인력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와 가치로 구성함. 관련이 깊은 부처간 공동 작업으로 실시
- 분야별 역량요소는 활동분야 및 경력단계에 따라 차별화되는 부분과 개념으로 구성함
- □ 개발된 역량모델을 통하여 다문화전문인력의 현재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함. 또한 다문화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요소로 반영하도록 함

# 3. 정책효과

- □ 다문화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이론화하고 실증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에 기 반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
- □ 개발된 역량모델의 내용을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환류함으로써 이들 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 이들의 전문성을 고취함으로써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다문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함
- □ 궁극적으로 다문화 관련 현장에 전문인력의 투입을 유도하여 관련 사업 수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함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교육복지지원과)

▶ 관계부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보건복지가족부(다문화가족과), 여성부(권익증진과)

#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방지 대책

수행과제명 :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과제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Tel: 02-3156-7154, e-mail: mjnglee@kwdimail.re.kr

#### 요 약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강간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은폐되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법의 미비로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은폐된 범죄인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보호, 집행 차원의 포괄적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사회에서 데이트 성폭력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은폐되어 있음.1) 성적 자유를 향유하며 활발한 교제를 경험하는 젊은이들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19세-30세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이 결여된 성적접촉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적으로 활동적 경향을보이는 사람들은 성적 동의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성적 동의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나 가해의 상황에

<sup>1) &</sup>quot;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가 원치 않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행사되는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강간법 개정을 고려하여 성폭력 논의를 폭력의 강도가 센 심한추행과 강간에 초점을 두어 전개하였다.

처할 위험이 높음

- □ 성폭력은 낯선 치한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념으로 인하여 친밀한 사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도움 청하기를 주저함.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수준이 낮아 이러한 행위를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성폭력의 심각한 유형인 성폭행에 대한 우리나라 법적 규제는 성적 자유를 경험하는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음
- □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법의 미비로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은폐된 범죄인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정책이 요구됨. 홍보 및 예방, 피해자 보호 강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관련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요구됨
- □ 본 정책의 목적은 데이트강간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위험을 청소년 및 청년층에게 홍보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상담소나 대학내 상담소의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성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촉구하는데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방지정책은 예방, 보호, 집행의 틀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함



<그림 1>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방지 대책

#### □ 예방

- ㅇ 데이트 성폭력 위험성 홍보
  - 교제가 자유로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의 위험 성을 홍보함
- 비동의 성관계의 위험성 홍보
  - 비동의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성폭력이라는 점을 교육
  - 성적행동에 있어서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 요하고 이것을 넘어 선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것을 교육함

#### □ 보호

- ㅇ 여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 강화
  -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피해자 자조그룹 지원
- 대학내 데이트강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데이트강간을 명시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항 학칙에 포함
  - 데이트강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교내 상담기관 역할 강화
  - 데이트강간 피해자 학업중단 방지 지원

#### □ 집행

- 강간법 개정 촉구
  - 데이트강간 등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움을 홍보
  -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중요성 홍보 및 촉구
- 강간피해자 보호 촉구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에 대한 증언 요구 및 증거 채택 제한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촉구

# 3. 정책효과

진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위험에 대한 정소년 및 정년증 대상 용보로 폭력 발생 예방	- 성
비동의 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확산으로 성폭력 피해 발생 여	계방
여성폭력상담소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자 상담 및 자조그룹 - 을 통한 피해자 의 사회복귀 지원	<u> </u>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학내 지원체계 강화로 인한 피
해자 보호
대학내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학업 중단 방지
강간법 개정 촉구를 통해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유구

▶ 주관부처 : 여성부(인권보호팀)

▶ 관계부처 :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안전과)

# 역아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과제명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I)

과제책임자 : 장미혜 연구위원 Tel: 02-3156-7133, e-mail: mhchang@kwdimail.re.kr

#### O 0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밝히며,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과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임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여아 및 여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음.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음.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음
- □ 이처럼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관련하여 여성안전문 제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함.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위험이라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으며, 같은 위험 중에서도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 정폭력과 같은 여성 관련 위험이 다른 위험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음

-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위험 요인과 여성과 관련된 위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음. 이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 누어 유형화하였으며, 그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 관련 위험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음.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하 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여성안전과 관련 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여 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 할 수 있을 것임
-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신종인플 루엔자와 아동성폭력사건인 '조두순사건'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와 대중 매체의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 떻게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음.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음
- □ 안전한 사회는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임.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한 대책방안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다루고 있 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이 마련되는 자료 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한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 2. 정책의 추진방향

- □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안전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중심 으로 한 위험측정에 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 관련 위험(성폭력, 성희롱, 신체적 가정폭력, 언어·정서적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자신에게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남녀 차이를 보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성폭력, 성희롱, 범죄, 언어·정서적 가정폭력의 순이며, 모든 위험에서여성은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남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험관리를 위해 개인, 이웃,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알아본 결과 국가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군대가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며 국가 지도자와 정당 등은 모든 기관을 통틀어 가장 신뢰가 낮은 기관으로 나타났음. 개인에 대한 불신의 정도도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면,이는 피해를 경험한 경우 주위에 알리거나 보고를 하는 행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 여아와 여성의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각 영역의 조성방안과 보편적인 사회환경 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여성의 위험에 관하여 특히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신뢰에 관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하여 아동,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공간조성방안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가와 아동, 여성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환경 조성방안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3. 정책효과

#### □ 여아와 여성의 안전을 위한 공간 조성방안이 필요함

- 공원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한 시야확보, 범죄예방 설계 적용, 방범 및 방재 관리 시스템구축과 안전관리 지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파트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성 안전귀가로 설치, 야간 적정조도유지, 범죄예방, CCTV설치 및 범죄예방 설계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함.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 적정 조도 유지, 여성안전 택시 승강장 설치, 여성의 안전을 위한 원칙의 제정 및 실행이 필요하고, 여성이 안전한 주차장을 위해서는 여성 우선 주차장제 도입,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 주야간 적정 조도 유지, 지하주차장 시야 확보 및 안전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여성이 안전한 화장실을 위해서는 방범 및 경보 시스템, 주야간 적정 조도유지, 안전한 단위 부스 출입문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아동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제

- 치안 대책 강화 및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성장얼굴 변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상정보 공개, 전국적인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돌봄학생 통합지원센터 구축,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의 내실화, 아동 수준별 성폭력 예방 교재 개발 및 보급,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확대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제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적 · 제도적 여건의 정비 및 성폭력 관련 의료 서비스 개선, 긴급한 도움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

####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제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 발생시 빠르고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는 정책 실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 향후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 법률적 측면에서 아동 · 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피해 지원법의 이원화가 필요하며, 아동 · 여성보호 대책 추진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필수적임.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 근거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과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보도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주관부처 :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부처 : 시·도, 시·군·구

# 가족・여성복지

여성가족패널자료의 성잭 왈용노 제고 방안	
/이택면 연구위원	109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강화 방안	
/김혜영 연구위원	111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김혜영 연구위원	113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	
(용역기부)의 확대/조선주 연구위원	116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 및 e-통장 개설/조선주 연구위원	120
자원봉사활동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조선주 연구위원	124
가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문화연계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단체의 웹사이트 개설 지원	
/조선주 연구위원	127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김영택 연구위원	131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강화 방안 /김혜영 연구위원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김혜영 연구위원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 (용역기부)의 확대/조선주 연구위원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 및 e-통장 개설/조선주 연구위원 자원봉사활동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조선주 연구위원 가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문화연계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단체의 웹사이트 개설 지원 /조선주 연구위원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 여성가족패널자료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가족패널조사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02-3156-7167, e-mail: onbike@kwdimail.re.kr

#### O 0

여성의 삶을 종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차에 걸쳐 전국 9068개 가구 9997명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기구 대비 85%의 패널유지율을 기록. 본격적 종단자료로서 다양한 여성 정책의 효과 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설계 및 평가, 그리고 그에 기초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는 여성의 삶을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기초자료 생성이 필수적 임. 가족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등의 횡단면 조사들을 통합하는 대규모 전국 종단조사로서 여성가족패널조사 지속적 실시 필요

여성가족패널조사

-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 4차년도 연구 진행중(전국규모의 패널조사)

- 조사목적 :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 실태에 대한 종단적 추적

- 조사대상 :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 추출한 9,000가구내 만 19세-64세

여성가구원 약 10.000명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 세부내용 :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 가족생활의 변화,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형성과정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 2. 정책의 추진방향

□ 여성부 등 정책 당국은 여성 정책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성관련 정책들의 효과적인 수행과 타 정책들의 성별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사 항목을 종단 자료 생성 과정에 상시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자료의 정책적 활용도에 초점을 맞춘 자료 설명회 개최 필요

### 3. 정책효과

□ 보육 등 일가족 양립정책, 여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정책, 여성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평등 관련 정책 등 여성관련 광범위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종단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여성부, 노동부,

▶ 관계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부

###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강화 방안

수행과제명 :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혜영 연구위원 Tel: 02-3156-7139, e-mail: khyoung222@kwdimail.re.kr

#### 요 익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한 편견과 모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임. 한국의 미혼모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될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지위의 상승으로 결혼여부와는 별개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미혼모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미혼모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욕구분석을 통해 미혼모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미혼모는 점차 저연령화됨에 따라 10대 미혼모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본조사대상자의 경우에도 10대(19세 이하) 미혼모의 비중은 3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학생신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임신이나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과 더불어 주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스스로가 자퇴하거나, 이미 학업포기자 가운데 임신한 경우 또는 임신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린 뒤에 자퇴를 권고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일부의 경우에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혹은 상담선생님의 배려로 학업을 계속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응방침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이나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혹은 학교분위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한 여학생들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지침의 작성 및 운영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 등의 문제예방과 적극적 상담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1학교 학교복지사, 상담인력 1인 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인력배치
교칙에 따른 처벌보다는 학업지속 의사에 따라 학생의 학업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의 수립과 관련 협조지침의 명문화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학생을 동일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당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적을 유지하면서 위탁학교 등의 대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해당학교장의 의무사항으로 공시

### 3. 정책효과

학업중단으로 인한 정소년미	혼모늘의	빈끈	유입 경	足 7	사단
학업지속을 통한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및	성장잠	재력	배양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성 제고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 관계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

수행과제명 :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김혜영 연구위원 Tel: 02-3156-7139, e-mail: khyoung222@kwdimail.re.kr

#### O 0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한 편견과 모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임. 한국의 미혼모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될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지위의 상승으로 결혼여부와는 별개로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미혼모의 특성과 함께 이들이 미혼모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음.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욕구분석을 통해 미혼모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양육미혼모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여성 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관입소 전체 미혼모 가운데 양육희망 미혼 모의 비중은 31.7%로 나타났으며, 본 조사결과에서는 이미 자녀양육을 선택하였거나 현재 양육을 계획중인 미혼모의 응답율이 53.5%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평균 3.18:1-4), 특히 양육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와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보다 '마음의 혼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에 비해,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와 30세 이상의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아기를 편하게 키울 수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면 전체 응답자의 53.0%, 사회적 편견이 개선될 경우는 57.0%로 자녀양육의사를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편견 개선방안 마련이중요함
2.	정책의 추진방향
	저소득 미혼의 경제적 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자녀가 만 3세까지가 될 때까지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즉 저소득 미혼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최소한의 시기 동안에는 이들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수급자의 자격을 부여
	미혼모자시설에서의 직업훈련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일센터나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구직활동 및 현재 취업훈련이나 취업한 미혼모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서 비스 우선적용 방안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경우에는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학업도 우미와 아이돌봄 지원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한국사회의 경우 주거비용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양 육 미혼모의 시설의 최소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SH 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양육미혼모들의 생활거주지 지원
3.	정책효과
	양육미혼모들에 대한 초기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양육미혼모와 이들 자녀의 빈곤유입 경로 차단
	미혼모 자녀의 안정적인 사회화 과정 지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통합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

▶ 관계부처 : 여성부

##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용역기부)의 확대

수행과제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조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소득공제 인정액: 정책의 시행초기에는 1일 5만원 상당의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제도 정착기에는 100% 상 향조정, 제도 안정기에는 기본공제처럼 100만원 공제 등 단계적 확대

○소득공제 인정 영역 :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확대

○소득공제 인적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기부금 공제의 인적 범위 확대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소득세법 \$34의2, 소득세법 시행령 \$81⑤,⑥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봉사활동에 대한 가액 산정
    - ①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 ②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단, 소수점이하는 1일로 계산)
    - ③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제 공할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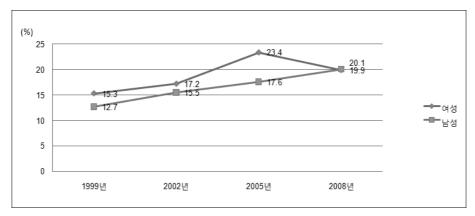
- 방법: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세 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림 1>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가치 인정 체계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15.3%에서 19.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인구의 5명 중 1명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인구의 74.1%가 여성임
- □ 이처럼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 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음



<그림 2> 10년간 자원봉사활동 추이

### 3. 정책효과

- □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결과 20세 이상 자원봉사 인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36,801억원이며, 남성의 경제적 가치는 25,304억원으로 여성의 11,497억원보다 13,807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수치는 2008년 GDP의 0.3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2008년 정부일 반예산(174조원)의 2.1%를 차지하는 비중임.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21%에 해당하는 수치임. 즉,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21%를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과언이 아님
- □ 정책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설정 후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시나리오1은 근로소득공제, 시나리오 2는 근로소득공제+일당(5만원)을 공제, 시나리오3은 근로소득공제+일당(10만원, 즉 100%상향 조정)을 공제하는 경우임
- □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졌을 때, 여성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비율은 87.7%(887명)였으며, 감소하는 비율은 2.3%(124명)로 나타남. 반

면 남성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하는 비율은 80.0%(782명)였고, 감소 하는 비율은 20.0%(196명)였음

- 이는 여성들의 다수가 자원봉사 시간에 대해 소득탄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근로소득 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것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참가 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변화는 매우 미미함
  - 자원봉사실태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원봉사참여율이 20%정도라고 가정할 때, 전체인구 약 5천만 명의 20%, 1사람당 5만원으로 환산하면 5천억 원(천만 명x5만원)정도 소득공제가 있을 수 있음
  - 최저세율은 6%로 실제 세수가 줄어든 것을 계산하면 300억 원의 세수 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음. 경제적 가치의 추정치는 약 36,801억 원임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관계부처 :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자원과), 여성부(복지지원과),

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 및 e-통장 개설

수행과제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 조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 요 약

-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해주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VMS)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새올'이 있음. 상기 두 시스템은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비영리기관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실적을 관리하기도 함.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인정 및 보상을 위한 개인들의 자원봉사이력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기타 VMS의 신한 MAXX 선불카드와 일부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증이 있음
-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매칭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과 자원봉사활동 e-통장 개설이 필요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자원봉사활동의 인정・보상제도는
  -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해주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VMS)과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 '새올'이 있음. 두 시스템은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로비영리기관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실적을 관리하기도 함

- □ 기타 인증시스템으로는 VMS의 신한 MAXX 선불카드와 일부 자원봉사 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증이 있음
- □ 상기 자원봉사활동의 인정 및 보상을 위한 개인들의 자원봉사이력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여성자원봉사자들은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인정,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근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의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VMS(보건복지가족부)

새 올 (행정안전부)

<그림 1> 자원봉사활동 인증 전산 시스템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15.3%에서 19.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인구의 5명 중 1명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인구의 74.1%가 여성임
- □ 이처럼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개인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단체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 정책적 지원은 예산편성을 통해 가시화 되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 원봉사활동시행계획 등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의 기 초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3. 정책효과

-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인정보상체계와 관련 관련 법, 시행 계획 등을 분석 하고,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함
- □ 자원활동센터나 사회복지기관에 비해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인증체계는 매우 미약한 편이고, 세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나 자원봉사축제 등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한 역량(공간이나 전담인력)이 있는 지역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많지 않음. 따라서 현황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도 적을 뿐 아니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에도 소극적임. 인센티브를 지원할 인력이나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표 1> 자원봉사활동 관련 부처·기구·근거 법령 등

#### 자원봉사센터

관련 부처	센터명	근거 법령	업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지침 및 조례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9조	사회복지 봉사활동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기본법」제31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65조	청소년 활동 진흥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복지법」제23조제2항	노인 지역봉사 활성화
여성부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 28조의2	여성 봉사활동 지원

-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매칭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이력관리를 위한 통합전산망 가동과 자원봉사활동 e-통장을 개설함.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측정하고, 동기부여를 독려할 수 있음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자원과), 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 관계부처 : 여성부(복지지원과)

# 자원봉사활동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수행과제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조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 요 약

-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 자원봉사 활동 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를, 예를 들면 교통비나 식대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줌
- ○이 때, 자원봉사활동 인정단체 지정을 위해 공익성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서류등공시시스템(국세청)과 연계 및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에 자원봉사활동 관련 내용 추가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차별화된 보 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러한 활동에 드는 실비 를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음
- □ 특히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근 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음

- □ 외국의 관련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네덜란드: 자원봉사활동과 연관된 경비는 기관이 부담하고 자원봉사자 는 기관으로부터 주당 dfl40을 받을 수 있음
  - 이탈리아: 자원봉사자들이 기관에서 활동의 결과로 나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라트비아 법 역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재단이나 협회의 이사진의 결정이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음
  - 폴란드: 활동에 수반되는 여행경비나 일당의 경우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 같이 자원봉사 기관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헝가리: 실업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 정책의 추진방향

 시난 10년간 안국의 여성 사원공사활동의 수이들 살펴보면 15.5%에서
19.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인구의 5명 중 1명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인구의 74.1%가 여성임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가족 내에서의 지지와 인정의 부족이 가장 큰 요
인이며, 사회에서의 인정과 지지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
한 중요한 요소임. 이러한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근
본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의 적절한 경제적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것으
로 인식하고 있음

### 3. 정책효과

화에 기여할 수 있음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자원봉사 활동 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를, 예를 들면 교통비나 식대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 무임,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인정단체 지정을 위해 공익성 검증제도의 도 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익법인 결산서서류등공시시스템(국세청)과 연계 및 법인세

법 시행령 36조에 자원봉사활동 관련 내용 추가함으로써 자원봉사활성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행전안전부(민간협력과)

▶ 관계부처 : 여성부(복지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자원과)

# 가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문화연계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단체의 웹사이트 개설 지원

수행과제명 :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조선주 연구위원 Tel: 02-3156-7109, e-mail: sjcho@kwdimail.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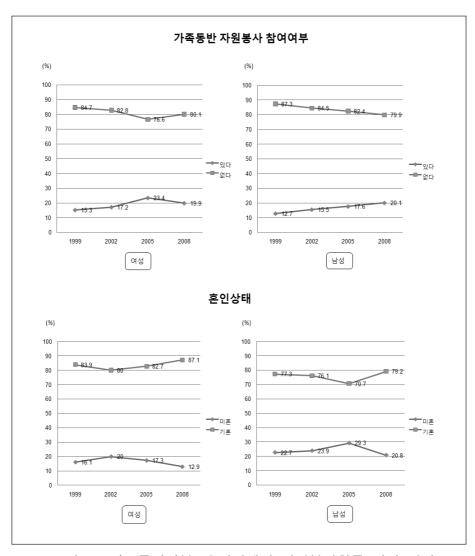
#### 요으

- ○가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참여유도 마케팅이 필요
- On & Off Line 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익광고를 허용하고 자원봉사단체들의 웹사 이트 개설을 지원
- 문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는 볼런테인먼트 경진대회나 박람회의 정기적인 개최 를 추진하고,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2008년 가족동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여성은 36.8%로 남성은 42.1% 임. 특히 1999년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의 경우 10.9%에서 36.8%로 29.5%가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10.9%에서 42.1%로 31.2%가 증가했음
- □ 또한 실증분석 결과 남녀 모두 기혼인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전업주부의 비율은 1999년에 비해 60.7%에서 45.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은 1999년 24.7%에서 2008년 29.3%로 2005년 31.1%까지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으며, 문화, 교육, 환경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높은 감성지수와 능동적인 자세를 여성들의 강점으로 인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축제로 여기고 있음



<그림 1> 가족동반여부, 혼인상태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현황

### 2. 정책의 추진방향

- □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추이를 살펴보면 15.3%에서 19.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인구의 5명 중 1명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인구의 74.1%가 여성임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08년도 시행계획은 10개 부·처·청 및 지자체의 5대 정책영역, 13개 정책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도 시행계획은 10개 부·처·청 및 지자체의 5대 정책영역, 13개 정책과제, 3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원 봉사참여 인구비율의 절대다수(약 75%)를 차지하는 여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사업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표 1>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중 2008년도 시행계획

HH	시행사업	세부사업 개수		금액		
부처	개수	총 세부사업 개수	여성관련 세부사업 개수	총 사업비	여성관련 세부사업비	
교육과학기술부	1	3	0	5,190	0	
외교통상부	1	1	0	190,000	0	
법무부	2	3	0	2,854	0	
핵정안전부	11	29	0	41,030	0	
문화체육관광부	13	20	0	54,451	0	
보건복지가족부	10	12	0	9,121	0	
여성부	4	3	0	539	0	
경찰청	2	1	0	768	0	
소방방재청	2	1	0	1,563	0	
문화재청	1	1	0	3,990	0	

시행	시행	세부사업 개수		금액		
부처	사업 계수	총 세부사업 개수	여성관련 세부사업 개수	총 사업비	여성관련 세부사업비	
서울특별시	12	30	0	10,477	0	
부산광역시	20	45	1(청소년자윉봉사활동및 참여활성화 - 대학생, 어머니, 세대통합봉사단)	10,580	34	
대구광역시	22	28	0	18,320	0	
인천광역시	9	9	1(부처별자원봉사특성한프로그램개발및지원- 사회복지및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16,817	861	
광주광역시	13	36	0	2,285	0	
대전광역시	10	17	0(청소년자원봉사활동및참여활성화- 한마음가족봉사단운명)	3,166	0(24)	
<b>을</b> 산광역시	15	27	0	8,964	0	
경기도	13	27	1(여성전문자원봉사자양성)	5,822	10	
강원도	20	21	0(부처별자원봉사통성화프로그램개발및지원- 가족봉사단 Famvoluntee(운영)	7,148	0(140)	
충청북도	16	25	0	14,187	0	
충청남도	9	12		18,613		
전라북도	16	25	1(자원봉사전문조직이용성· 대학생,노인,여성전문봉사단구성및용영지원,부처별자원봉 사통성화프로그램개발및지원,가족봉사단)	16,909	320(145-가족봉사단)	
전라남도	13	9	0	10,614	0	
경상북도	11	11	0	7,741	0	
경상남도	11	39	0(청소년자원봉사활동및참여활성화 항부모지도단활동지원(종윤리자원봉사단체및네트워크사 업지원(어린이교통사고종이기봉사활동지원)	7,749	(10)(25-교통사고)	
제주특별자치도	15	26	0	19,264	0	

### 3. 정책효과

- □ 자원봉사활동 시행계획 개선으로 자원봉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가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와 참여유도 마케팅을 통해
  - On & Off Line 상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익광고를 허용하고 자원 봉사단체들의 웹사이트 개설을 지원
  - 문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하는 볼런테인먼트 경진대회나 박람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추진하고,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 주관부처 : 여성부(복지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사회서비스자원과),

행전안전부 (민간협력과)

▶ 관계부처 :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활동 담당과

### 여성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

수행과제명 :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과제책임자 : 김영택 연구위원 Tel: 02-3156-7177, e-mail: ytk@kwdimail.re.kr

#### O 0

본 보고서는 성별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수준과 정신건 강 상태별로 자살 원인 규명을 분석하였음. 또한 기존의 자살 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자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는 여성 자살 예방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의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 □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

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 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그러한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자살 관련 외국 사례 및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과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또한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양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 2. 정책의 추진방향

□ 정신건강상담센터와 여성폭력상담소간 연계 시스템 구축

본 연구 결과에서 여성의 자살원인은 정신건강문제와 가족문제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은 남편의 실직, 외도 등 가정불화와 가족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고통이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므로, 여성의 우울증 치유는 정신건강센터의 우울증 중심의 상담뿐 아니라 우울증의 원인이 가족문제,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효과적인 우울증 치유를 위해서는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원인치유가 필요함

□ 산전, 산후의 산모 우울증 치유를 위해 정신건강센터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연계 강화

산전, 산후시기의 우울증은 당시뿐 아니라 이것의 의식적, 무의식적 축적은 이후 40, 50대의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예방강좌 등 특정시기에 집중관리가 요청됨. 산모들이 정신건강센터를 이용하면 우울증 진단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이용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임신중, 산후시기에 이용할수 있도록 지역의정신건강센터와 산모들이 다니는 인근지역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간 MOU 체결을 통해 산전후 우울증 검진 및 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함. 서초구 등 현재 시행 중인 곳이 몇 군데에 불과하므로 확대가 요청됨

예) 서초구 정신보건센터와 인근 산부인과의 연계로 임산부 우울증 진단

#### □ 자살예방사업에 성인지적 구분 통계 적용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결과 통계를 제시할 때 성별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으로 구분된 통계를 사용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가족와 지자체에서 지침을 수립하여 통계를 정책에 보다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성별분리 통계가 필요함

#### □ 여성 특이성을 반영한 정신건강 검사도구 개발

여성의 특이적인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정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표 개발이 필요함

정신건강 지표 개발 필요
 여성의 특이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
 의 양립, 가정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표 개발이 필요함

정신건강 검사도구 개발
 기존의 정신건강검사에서 벗어나 여성의 특이적인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신건강 검사도구 개발이 필요함. 전 연령층에 대하여 자살위험성을 사정하고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필요한 도움을줄 수 있는 제도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함

#### □ 생애주기별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자살예방정책이 필요

- 이 여자 청소년
  - 스트레스 대처훈련, 관계증진 및 자기표현 훈련
  - 부모교육, 대중매체 홍보: 성적으로 평등한 자녀교육 분위기 조성 노력
  - 게이트키퍼 교육: 부모, 형제, 친구, 교사대상 자살생각(충동)시 징후 알아차릴 수 있는 단서, 조력, 돌봄의 방법을 교육

#### ㅇ 중년 여섯

- 중년여성들의 상실감, 외로움을 달래줄 지지집단 형성: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내 지지망 혹은 또래 상담자의 돌봄과 조력
-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외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활동

#### ㅇ 노인 여성

- 노인케어담당자 대상 여성노인 특성 교육: 여성노인의 심리적 특성 이해교육 및 상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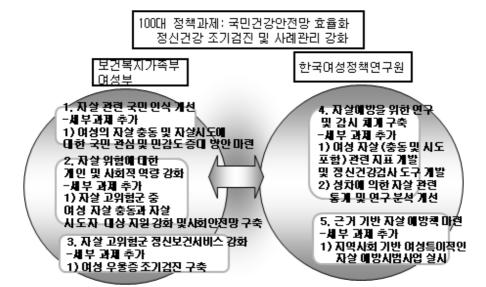
#### □ 여성의 외부 사회적지지망 형성을 위한 인간관계 증진 훈련기회 제공

여성들에게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 등의 요인은 위험요인이면서 동시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연령층을 막론하고 여성들에게 대인관계 증진 훈련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 또래 지지집단을 만들어 자신의 지지망 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 자살(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 포함) 예방을 위한 여성부 및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역할 증대 필요

본 연구에서 여성의 자살 충동 및 시도는 남성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부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하여 자살예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여성부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하여 자살 충동자 및 자살 시도자를 포함하는 자살 고위험자 집단을 선별하고 성별, 연령별, 사회 계층별 맞춤형 자살 예방 방지책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표한 제 2차 자살예방방지 종합계획(2009-2013년)에서 10개의 향후 추진 과제 중 여성부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 할 수 있는 다섯 개의 과제를 선출하고 각 과제별 세부 과제를 추가시킴 「그림 1」참조

- 첫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관련된 향후 세부 추진과제에 여성의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감도를 증대하는 방안을 추가함이 필요함
- 두 번째로, 자살 위험에 대한 개인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에 자살 고위험군 중 여성의 자살 충동과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및 지원 강화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가함이 필요함
- 세 번째로, 자살 고위험군 정신보건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세부 추진과 제에 자살 충동 및 자살 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여성 우울증 조 기검진 구축을 추가함이 필요함
- 네 번째로, 자상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감시 체계 구축과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협력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여성 자살(자살 충동 및 시도 포함) 관련 지표 개발 및 여성 특이적인 정신건강검사 도구 개발과 성차에 의한 자살 관련 통계 및 연구 분석 실시를 추가함이 필요함
- 다섯 번째로, 근거기반 자살 예방책 마련과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에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역사회를 기반을 하는 여성특이적인 자살예방 시범 사업 실시를 추가함이 필요함



<그림 1> 제 2차 자살예방방지 종합계획(2009-2013년) 추가 추진과제 및 체계

### 3. 정책효과

□ 여성 자살의 특이성에 따른 자살예방방지책은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자살 증가 추세를 감소시킬 것임. 이는 결국 자살예방방지 사업의 사회적 비용 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임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건강정책국)

▶ 관계부처 : 여성부

# 2009년도 연구과제명

1.	2009년	기본연구과제	목록	139
2	2009녀	수탄여구과제	모로	147

# 1. 2009년 기본연구과제 목록

## □ 기관고유사업

## - 기본연구사업

번호	기본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중점)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100,000	'09.1.1~12.31	김태홍	유희정, 강민정 전용일(성균관대 교수)
2 (중점)	여성 일자리이동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68,000	'09.1.1~12.31	민현주	임희정
3 (중점)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비연구(III)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년의 성과와 과제	58,000	'09.1.1~12.31	박선영	박복순 권혜자(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원정(위촉연구원)
4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 방안 연구	67,000	'09.1.1~12.31	조선주	이선행 한동우(강남대 교수)
5	공공부문 관리직여성 핵심역량 강화 지원방안	68,000	'09.1.1~12.31	문미경	김혜영(전문)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6	기초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남녀의원 의정활동 변화에 관한 연구	73,000	'09.1.1~12.31	김원홍	양경숙(제4.5대 서울시 의원) 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7 (중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평등 지수 관리 방안	70,000	'09.1.1~12.31	전기택	문유경, 주재선
8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82,000	'09.1.1~12.31	이수연	백영주 박군석(한림대 연구교수)
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85,000	'09.1.1~12.31	이미정	변화순 김은정(위촉연구원)
10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60,000	'09.1.1~12.31	김영택	김인순 주영수(한림의대 교수) 이지연(위촉연구원)
11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 과제	80,000	'09.1.1~12.31	정해숙	유진은(한국교원대 교수) 김미윤(위촉연구원)

## - 연구관련사업

(단위 : 천원)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과제담당자
1	한국의 성 인지 통계	23,000	'09.1.1~12.31	주재선	_
2	아태지역의 성 주류화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32,000	'09.1.1~12.31	김영혜	윤현주, 정혜선 황정미(위촉연구원)
3	대외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120,000	'09.1.1~12.31	김영혜	윤현주, 정혜선 이소연(위촉연구원) 황정미(위촉연구원)
4	여성정책포럼	30,000	'09.1.1~12.31	황정임	장윤선, 정상숙 윤미혜
5	연구기획 운영	177,326	'09.1.1~12.31	황정임	장윤선, 정상숙 윤미혜

#### - 연구지원사업

					(한ਸ : 전편)
번호	연구관련사업명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과제담당자
1	동향분석 및 간행물 발간	120,000	'09.1.1~12.31	박수미	이경식, 최윤정
2	기관 홍보체계 혁신 및 연구성과 관리	80,000	'09.1.1~12.31	장혜경	황정임, 장윤선 정상숙, 윤미혜 황애리(계약직)
3	연구지원 및 고객관리	174,000	'09.1.1~12.31	윤희갑	신현식, 이정미
4	정보시스템 운영	146,000	'09.1.1~12.31	김성배	김성익 최기산(계약직)
5	지식정보서비스 및 자료실 운영	87,000	'09.1.1~12.31	박미현	이경식, 정혜숙
6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250,000	'09.1.1~12.31 (4/10년차)	전기택	주재선, 최기산
7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140,000	'09.3.1~8.31	김성배	-
8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100,000	'09.1.1.~12.31	정혜숙	박미현

## □ 일반사업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과제담당자
1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I):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및 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500,000	'09.1.1~ 12.31 (3/5년차)	김영옥	마경희, 김 진(계약직) 이선행, 김효선(계약직)
(-1)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작성 모니터링: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_		마경희	김효선
(-2)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역량 진단 및 교육안 개발	_		마경희	송인자(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김효선(계약직)
(-2 -부록)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역량 진단 및 교육안 개발 부록: 성인지 예산 강의안	-		마경희	송인자(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김효선(계약직)
(-3)	국내외 성인지 예산 운동 사례분석과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		김 진 (계약직)	김경희(중앙대 교수) 이원희(한경대 교수)
(-4)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1) 보육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 2005년~2009년_ (위탁과제: 중앙대학교)	(20,000)	'09.4~9 (6개월)	김경희 (중앙대 교수)	안현미 강은애(위촉연구원) 국경희(위촉연구원)
(-5)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2) 가정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정	(11,790)	'09.5.1~ 10.31 (6개월)	문유경	
(-6)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3) 실업급여제도 예산의 젠더 분석_(위탁과제: 서울대 여성연구소)	(40,000)	'09.6~10 (5개월)	김혜란 (서울대 교수)	배은경, 홍찬숙 김은하 양지윤(연구보조원) 노법래(연구보조원)
(-7)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인지적 평가_(위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60,000)	'09.6~10 (5개월)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영 김정현(연구보조원) 김현숙(연구보조원)
(-8)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5)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인지적 분석	(8,178)	'09.5.1~ 10.31 (6개월)	정해숙	박선영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책임자	과제담당자
(-9)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6)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대상자 선정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소요예산 추정을 중심으로	(11,880)	'09.6~10 (5개월)	김영택	이미라(위촉연구원)
(-10)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7) 녹색뉴딜사업에서의 여성일자리 규모 추정	(5,670)	'09.5.1~ 10.31 (6개월)	김영옥	이선행
(-11)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8)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역의 성별 취업확률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과한 다층모형 분석: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중심으로	(4,890)	'09.5.1~ 10.31 (6개월)	이택면	정성진(위촉연구원)
(-12)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9)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세출예산 및 임금효과 추정	(7,618)	'09.5.1~ 10.31 (6개월)	조선주	임희정, 문미경 노은희(위촉연구원)
2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 : 성 주류화 실행 모델 개발	350,000	'09.1.1~ 12.31 (2/5년차)	김경희	양애경, 김둘순(계약직) 송치선, 이선민(계약직) 허라금(이화여대 교수) 한정원(부산가톨릭대 교수)
(-1)	강원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경제·정보화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22,000)	'09.4~9 (6개월)	박기남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원)	신경아
(-2)	부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개발	(22,000)	'09.4~9 (6개월)	홍미영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연구위원)	최청락, 홍선영
(-3)	지역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실행모델 : 충남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22,000)	'09.4~9 (6개월)	김영주 (충남여성정책 개발원 성별영향평가 센터장)	김경희
3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III) : 일자리의 제도화	100,000	'09.1.1~ 12.31 (3/5년차)	오은진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선영(위촉연구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책임자	과제담당자
4 (중점)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일가족양립현실과 정책이용실태	300,000	'09.1.1~ 12.31 (2/2년차)	홍승아	이미화, 김영란 이영미(한남대 교수) 유계숙(경희대 교수) 이연정(위촉연구원) 이채정(위촉연구원)
5 (중점)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3차년도) -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250,000 (98,000)	'09.1.1~ 12.31 (3/5년차)	이선주	민무숙 신현옥(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태정(위촉연구원)
(-1)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 방안_(위탁과제: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0,000)	'09.4~10 (7개월)	황정미 (고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문경희, 정승희 양혜우
(-2)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_ (위탁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언론학회)	(30,000)	'09.4~10 (7개월)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정의철 (상지대 조교수)	김경희
(-3)	다문화 전문인력양성 현황과 정책과제	(62,000)	'09.1~12	민무숙	김이선 이춘아(한밭문화마당 대표) 이소영(위촉연구원)
(-4)	아시아국가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과 정책추진체계 연구_(위탁과제: 한국정책학회)	(30,000)	'09.4~10 (7개월)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최무현, 오승은 정준호
6	여성가족패널조사 (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500,000	'09.1.1~ 12.31 (4/10년차)	이택면	김승연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우원규(위촉연구원) 이주영(위촉연구원)
7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200,000	'09.1.1~ 12.31 (1/2년차)	장미혜	윤덕경
8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사적생활영역을 중심으로	100,000	'09.1.1~ 12.31 (1/3년차)	안상수	김이선
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160,000	'09.1.1~ 12.31	김혜영 <sup>(연구)</sup>	선보영 김은영(한신대 교수)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박은정(위촉연구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책임자	과제담당자
10	고학력 여성의 사업서비스업 진출 촉진방안	100,000	'09.1.1~ 12.31	신선미	송창용(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해진(위촉연구원) 이국희(위촉연구원)
11	여성관련 지식컨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60,000	'09.1.1~ 12.31	박미현	이경식, 양애경 김수자(이화여대 한국문화원 교수)

## □ 수시연구사업

					(611 647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책임자	과제담당자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정양립 정책 연구	비예산	'09.1.5~3.4 (2개월)	김태홍	홍승아, 유연규 임희정, 강민정
2	정부내 급속한 성비변화에 따른 공직관리 방안 연구	20,000	'09.2.10~6.9 (4개월)	문미경	임희정, 조선주 김혜영(전문)
3	「녹색성장시대,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14,000	'09.2.20~4.30 (2개월)	홍승아	김혜영(연구) 장미혜
4	여성친화경영 우수사례집	10,000	'09.4.20~11.20 (7개월)	임희정	김태홍, 강민정
5	여성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여성 일자리와 거버넌스	8,280	'09.6.15~8.31 (2.5개월)	이수연	신선미, 김경희
6	북한 여성실태 및 향후 대북정책 추진방향	5,000	'09.7~12 (6개월)	김원홍	-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역량 분석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10,000	'09.8.24~12.24 (4개월)	김태홍	민무숙, 오은진 이택면, 김승연
8	2010 지방선거 대비 여성정책의제 발굴	18,000	'09.9.1~12.31 (4개월)	김원홍	김혜영(전문)

## □ 협력연구사업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예산	연구기간 (년차)	연구책임자	과제담당자
1	「서머타임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6,750천원 (녹색성장위원회, 여성부 지원)	'09.7.31~8.31 (1개월 1일)	황정임	장윤선 황애리(계약직)

## □ 외부공동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기간	우리원 공동연구자	주관기관
1	노인 돌봄의 경험과 관계적 자율성의 정치	'08.2.1~'09.8.31 (19개월)	마경희	전북대학교
2	OECD/DAC의 개발협력 관련 주요 국제규범과 정책적 시사점	'08.10.1~'09.3.31 (6개월)	정혜선, 김영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경기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방안 연구	'09.4~6 (3개월)	김원홍	경기도기족여성연구원
4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1차)	'09.5.14~12.11	김이선	한국고용정보원
5	인재양성과 노동시장 진입체계 연구	'09.5.1~11.30 (7개월)	신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인도적 협력과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천방안	'09.3.1~12.31 (9개월)	장혜경	통일연구원
7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09.7~8 (2개월)	유희정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8	2009~2030 초·중등 교원인력수급 전망	'09.7.20~10.20 (3개월)	김태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	지역여성인력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새일본부 및 새일센터 모형구축을 중심으로	'09.7.1~9.30 (3개월)	오은진	경남발전연구원

번호	연구과제명	기간	우리원 공동연구자	주관기관
1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평가	'09.8~12 (5개월)	민무숙	숙명여자대학교
11	심층 성별영향평가: u-city 구축사업	'09.8~12 (5개월)	김원홍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2. 2009년 수탁연구과제 목록

## □ 2008년-2009년 이월과제

					(	단위: 전원)
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연구자	발주기관
1	여성인력패널조사	'08.5.6 ~'09.2.28	261,000	민현주	김종숙, 임희정 이택면, 김난주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여성부
2	미혼부모와 그들 자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08.8.15 ~'09.5.30	98,613	김혜영	이미정, 홍승아 안상수, 김영란 선보영	Give2 Asia
3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 해외입양, 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08.8.15 ~'09.5.30	36,331	이미정	김혜영, 김승연 유연규(서울신학대 교수) 박선주(위촉연구원)	Give2 Asia
4	여성친화적 신도시모델 개발	'08.9.18 ~'09.2.17	28,900	양애경	홍승아, 김영택 김인순 한경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경기도청
5	아동케어 실태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08.10.2 ~'09.3.2	38,000	장혜경	홍승아, 김영란	보건복지 가족부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평가 용역	'08.11.28 ~'09.5.27	56,000	윤덕경	황정임, 김인순	보건복지 가족부
7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08.11.1 ~'09.2.28	10,000	박선영	박복순 김 진(변호사) 김정혜(위촉연구원)	국회 사무처
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08.12.19 ~'09.4.18	50,000	민무숙	박성정, 오은진 박수미, 이택면 김승연	여성부
9	동작구 주요사업 성별영향평가 연구	'08.12.24 ~'09.6.27	19,670	이미정	문미경, 김영택 김승연 박선주(위촉연구원)	동작구청
10	2009 통계로 보는 광주여성	'08.12.23 ~'09.6.30	30,000	전기택	문유경, 주재선 윤동원(위촉연구원)	광주광역 시청

## □ 2009년 계약과제

						(단위: 선원)
구분	과제명	연구 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연구자	발주기관
1	공직내 급속한 성비 변화에 따른 종합적 인사관리방안 연구	'09.2.10 '09.6.9	10,000	문미경	조선주, 임희정 김혜영(전문)	행정안전부 여성부
2	가족 및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연구	'09.2.18 ~ '09.5.18	24,300	김혜영	홍승아, 선보영 진미정(서울대 교수) 정재훈(서울여대 교수)	보건복지 가족부
3	2009 성별영향평가 지원강화 사업	'09.2.19 ~ 12.31	20,000	김경희	민무숙, 송치선 한승준(서울여대 교수) 권문영(위촉연구원)	여성부
4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종합분석 및 지원	'09.2.19 ~ 12.31	45,000	양애경	김경희, 김둘순(계약직) 송치선, 이선민(계약직) 배미원(경기대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송유나(위촉)	여성부
5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및 개선방안	'09.2.19 ~ 12.31	45,000	김경희	양애경, 김둘순(계약직) 이선민(계약직) 김양희(젠더앤리더십대표) 권문영(위촉연구원)	여성부
6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	'09.2.19 ~ 12.31	30,000	이수연	김경희, 이선민(계약직) 송인자(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여성부
7	성별영향평가 DB 구축 및 운영방안	'09.2.19 ~ 12.31	25,000	백영주	주재선 이창길(시립인천전문대 교수)	여성부
8	성별영향평가 현안과제 발굴 및 분석	'09.2.19 ~ 12.31	25,000	양애경	김둘순(계약직) 송치선 송유나(위촉연구원)	여성부
9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 확대 및 능력증진 지원사업	'09.2.1 ~ 12.31	50,000	민무숙	신선미 장희영(위촉연구원)	교육과학 기술부
10	2009년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09.3.5 ~ 12.30	67,500	민무숙	박선영, 최윤정	여성부
11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09.3.5 ~ 12.22	139,900	김영옥	조선주, 마경희 김 진(계약직) 이선행, 김효선(계약직)	여성부
12	서울시 여성유망직종 프로그램 개발 연구	'09.3.2 ~ 7.31	90,000	오은진	이택면	서울특별시 여성능력 개발원

구분	과제명	연구 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연구자	발주기관
13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09.2.25 ~ 9.24	307,745	유희정	이미화, 민현주 강민정, 선보영 서영숙(숙명여대 교수) 백혜리(서울신학대 교수) 강정원(성서대 교수) 최은영(충북대 교수) 이순영(강원도립대 교수) 최혜영(창원대 교수) 송영주(계명문화대 교수) 이영환(전북대 교수)	육아정책 개발원
14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분석 및 지원방안	'09.3.17 ~ 10.31	40,000	김이선	정해숙, 이미화 정가영(위촉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15	서울시보육시설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09.3.19 ~ 7.18	15,000	유희정	강민정	서울시보육 시설연합회 민간분과 위원회
16	한국 여성분야 60년사	'09.1.1 ~ 11.30	15,000	김영옥	윤덕경, 신선미 황정미(고려대 연구 교수)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7	성평등지표개발과 측정방안연구	'09.3.30 ~ 12.25	84,300	김태홍	장미혜, 전기택 주재선 송다영(인천대 교수) 김미경(광주대 교수) 김영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보은(위촉연구원)	여성부
18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09.4.1 ~ 10.28	77,500	김혜영 (연구)	홍승아, 이택면 선보영 진미정(서울대 교수) 홍성만(안양대 교수)	보건복지 가족부
19	성별통계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방안 연구	'09.4.8 ~ 12.7	45,000	문유경	전기택, 주재선 차민정(위촉연구원) 김계양(위촉연구원)	여성부
20	경력단절여성의 기업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모형개발	'09.4.9 ~ 12.5	77,800	이택면	오은진, 강민정 박미연(위촉연구원)	여성부
21	여대생커리어개발프로 그램개선및평가방안	'09.4.10 ~ 8.30	28,100	신선미	민무숙 강혜영(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이지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해진(위촉연구원)	여성부

구분	과제명	연구 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연구자	발주기관
22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개선 및 전략적 추진방향 연구	'09.4.17 ~ 10.16	21,600	이미정	변화순, 윤덕경 김영택 박선주(위촉연구원)	여성부
23	2009년 여성인력패널조사	'09.4.22 ~ 12.31	64,000	민현주	이택면, 임희정	여성부
24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실태조사	'09.4.22 ~ 12.31	189,700	오은진	임희정, 민현주	여성부
25	과천시 중장기 보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09.4.22 ~ 8.26	37,200	유희정	조선주, 김인순 김혜영(전문) 최 진(육아정책개발센터)	과천시청
26	유엔여성차별철폐협 약 이행 전략에 관한 연구	'09.5.13 ~ 12.12	32,000	이수연	변화순, 이선주	여성부
27	폭력피해여성 지원서비스의 효과적 통합 연계방안 연구	'09.5.22 ~10.21	29,900	변화순	이미정, 박복순 박선주(위촉연구원)	여성부
28	여성아동안전지표 체계 구축 및 개발연구	'09.5.27 ~ 11.26	30,000	안상수	변화순, 문미경 장미혜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부
29	경제사회양극화의 현황과 대응방안	'09.5.15 ~ 11.15	40,000	장미혜	민현주, 이택면 엄유식(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30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09.6.30 ~ 12.30	47,000	이수연	박선영, 마경희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국가인권 위원회
31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09.7.17 ~ 12.16	19,900	윤덕경	김이선, 박복순	여성부
32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09.7.29 ~ 12.14	19,940	임희정	민현주, 조선주	여성부
33	호주제 폐지이후 관련 법령정비 연구	'09.7.29 ~ 11.28	29,980	박복순	박선영	여성부
34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09.8.19 ~ 12.18	35,310	마경희	김경희, 김효선(계약직) 박기남(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김양희(젠더앤리더십대표)	여성부

구분	과제명	연구 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연구자	발주기관
35	군복 보급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09.8.19 ~ 12.18	29,880	양애경	김둘순(계약직), 김 진(계약직) 이선민(계약직) 강남식(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김철홍(인천대 교수)	여성부
36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대학교육)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09.8.19 ~ 12.18	24,800	문미경	신선미 진종순(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여성부
37	2009년 대중매체 성차별 개선 모니터링	'09.8.21 ~ 12.20	24,920	안상수	이수연, 김승연	여성부
38	2008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실적 성과평가 및 2010년 성과지표 개발 연구	'09.8.21 ~ 12.21	24,500	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김영란	보건복지 가족부
39	여성폭력관련 시설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09.8.27 ~ 12.11	29,510	변화순	문미경 김혜영(연구) 현혜순(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대표) 박선주(위촉연구원)	여성부
40	입양특례법 개정 관련 쟁점 연구	'09.8.27 ~ 12.31	30,000	박복순	선보영	(재)중앙 입양정보원
41	보육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비교평가 연구	'09.9.15 ~ 12.31	20,000	이미화	홍승아 박수진(위촉연구원) 이윤희(위촉연구원)	(재)삼성 복지재단
42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매뉴얼 제작	'09.11.6 ~ 12.23	19,180	임희정	방상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선미(가야노무법인) 김수정(노무법인 한결)	여성부
43	퍼플칼라/퍼플잡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09.11.3 ~ 12.29	11,970	김태홍	강민정 이호근(전북대 교수) 최숙희(삼성경제연구소) 권태희(성균관대 교수)	여성부
44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컨설팅 시범사업	'09.4.13 ~12.31	65,400	임희정	김태홍, 강민정	여성부

## □ 2010년 이월과제

						(한파) 선원/
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액	과제 책임자	공동연구자	발주기관
1	도미니카(공) 미성년자 임신방지 및 여성 보건환경 개선 2차 PMC 용역	'08.10.6~ '10.12.31	527,000	김영택	김영혜, 정혜선	한국국제 협력단 (08년 이월과제)
2	2009 군대내 양성평등 현황 분석 및 확산 방안	'09.7.28~ '10.1.27	29,340	안상수	백영주, 문미경 김인순	국방부
3	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전달 개선방안(How to Improve Government Welfare Services For Low-Income Unwed Mothers in Korea)	'09.9.14~ '10.9.13	62,138	이미정	김혜영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 (KUMSN)
4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09.11.16 ~'10.4.15	48,500	김이선	마경희, 선보영	보건복지 가족부
5	인하대 성평등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9.12.9~ '10.5.8	36,046	김원홍	이수연, 김영택	인하대학교
6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개발 연구	'09.12.24 ~'10.6.23	48,400	민무숙	김이선, 안상수 류정아(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사회통합 위원회

## 2010 정책제안서

2010년 2월 2일 인쇄 2010년 2월 4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 (불광동 1-363)

전화 / 3156-7000(代)

인쇄처 : (주)늘품플러스

전화 / 070-7090-1177(代)